

2015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편람

Practical Handbook
insurance agency office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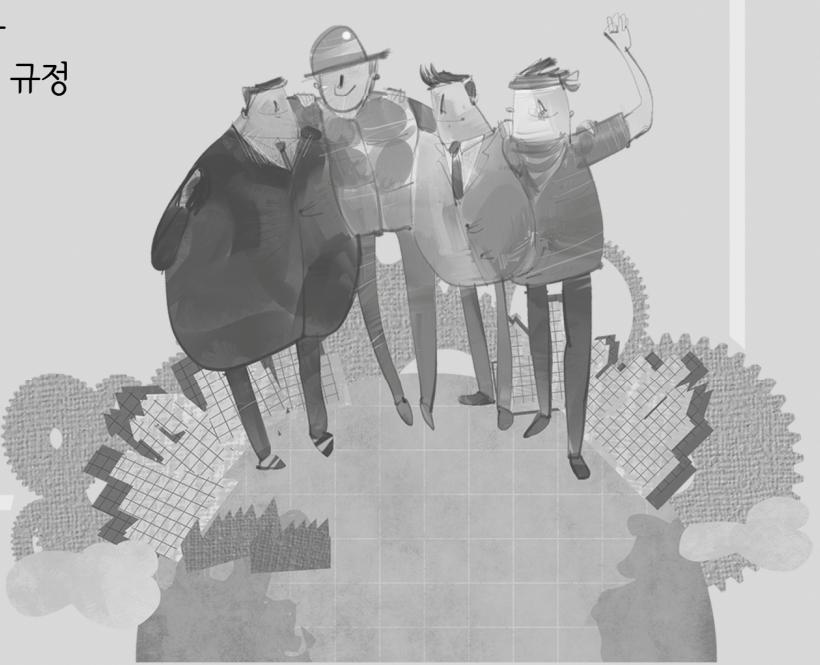
■ 제1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	1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요	3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6
제3장 인가내용 변경 및 업무의 폐지	12
제4장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및 승인	14
제5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5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20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22
제8장 개인정보 보호	25
제9장 관련 고시 및 규정	30
제10장 관련 서식	40
■ 제2편 산재 · 고용보험 개요	41
제1장 산재 · 고용보험 제도	43
제2장 산재 ·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44
■ 제3편 산재 ·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45
제1장 산재 · 고용보험 가입	47
제2장 산재 · 고용보험 적용범위	51
제3장 보험관계의 성립 · 변경 및 소멸	54
■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59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61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72
■ 제5편 산재 · 고용보험 보험료	75
제1장 보험료 산정	77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86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 납부 및 정산	105
제4장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113
■ 제6편 산재 · 고용보험 적용 특례	117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19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23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24
제4장 중 ·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32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 · 고용보험 특례	136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39
■ 제7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43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145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154
■ 제8편 벌칙 등	157
1. 과태료	159
2. 가산금	159
3. 연체금	160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60
■ 참 고	163
〈참고1〉 2015년도 고시사항 정리	165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168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170
〈참고4〉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173
〈참고5〉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176
〈참고6〉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178
〈참고7〉 2015년도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191
〈참고8〉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214

제 1 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

-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요
-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제3장 인가내용 변경 및 업무의 폐지
- 제4장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및 승인
- 제5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제8장 개인정보 보호
- 제9장 관련 고시 및 규정
- 제10장 관련 서식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요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의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각종 보험사무 대행(‘71년~)
 - 소규모 사업장 사무처리 부담 경감, 보험업무처리 간소화·효율화 목적
 - 통상의 대리와 달리 고용노동부, 공단 관계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음

2 위임사업주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지원금 지급대상 : 30명 미만)
-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 30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위임 가능
 - 사업의 합병 등으로 하나의 사업에 둘 이상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 해지된 것으로 봄
- ※ 주의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른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지원금을 받는 기관으로, 자기 사업장(중소기업사업주 포함)은 수임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상시근로자수 산정

-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

$$\frac{\text{전년도 공사실적액} \times \text{전년도 노무비율}}{\text{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times \text{조업 개월수}}$$

- 2)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별'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별'로 산정

3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
 1. 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 · 변경 ·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6.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위임할 수 없는 보험사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
 2.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지원금 신청사무(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사무
 4.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 대행사무
-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상기 위임할 수 없는 보험사무에 대한 보험사무 처리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에 따른 사무처리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사무 수임신고” 시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첨부 필요
- ※ 위탁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관계 소멸신고”와 “수임해지신고”를 병행신고 필요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인 가 절 차 》

인가교육 이수 (개인세무사에 한함)

- 교육대상 :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교육시간) : 집체교육(8시간)
- 교육과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장도의 이해 등 4개 과정

인가 신청 (구비서류 제출)

- 서면신고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신고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제출서류목록 확인 (공단)

- 법인 또는 단체 (인허가증 등)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등)
- 개인세무사 (세무사등록증, 교육이수확인증 등)

제출서류내용 확인 (공단)

-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확인

출장 확인 (공단)

- 보험사무 처리능력 판단
- 수임대상지역 적정여부 확인

인가여부 결정 (공단)

- 인가(불인가) 결정 및 인가서(불인가통지서) 통지
- 유의사항 안내(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회원승인 (공단)

사무 수임

- 사무위탁서 작성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
- 사무수탁 승낙 / 불승낙 (보험사무대행기관→사업주)
- 보험사무 수임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공단)

보험사무 대행

1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우회, 산재재해자단체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 노무·세무·회계법인, 법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세무사

2 인가교육(개인세무사에 한함)

가. 인가교육 실시기준

- (교육대상)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시간 등) 교육방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되, 전체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시간의 인정 등)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인가 교육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가교육의 세부과정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
 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
 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 인가교육 세부과정 〉

연번	세부과정 구분	시간	교육방법
1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2시간	집체
2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2시간	집체
3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이해	3시간	집체
4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	1시간	집체

※ 교육대상자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세부과정명, 교육일자 및 시간 등을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확인받아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인가교육의 실시

- (교육기관) 인가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위탁교육기관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교육계획 공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된 교육계획 또는 변경 내용을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변경인 경우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1.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주기)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강신청

1. 교육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교육대상자의 세무사등록증 사본
3. 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강결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

- (교육이수의 확인)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면,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

- (교육이수 유효기간) 교육이수의 유효기간은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2년
 - ※ 유효기간내 인가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가교육 이수 효력 상실
- (교육 비용 등) 인가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음
 - ※ '15년 현재, 교육비용은 1인당 56,000원임

3 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전자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 ※ 전자신고로 인가신청하기 위해서는 토탈서비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
- 서면신고 방법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단(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접수

나. 첨부서류

① (법인 또는 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등)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서 사용할 규약 사본(보안서약서 포함)

②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등록자로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 · 재직증명서 등)
-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서 사용할 규약 사본(보안서약서 포함)

③ (세무사)

- 세무사 등록자로서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 · 재직증명서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교육이수 확인증)

-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서 사용할 규약 사본(보안서약서 포함)

4) 인가신청시 유의사항

가. 처리기관

- 인가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 행함. 다만,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의 지사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 행함
-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법인이 각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 또는 지점별로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부 또는 지점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인가일자는 공단이 인가를 결정한 날을 말함

나.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인가신청시 구비서류에 다음과 같은 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①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및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② (공인노무사인 경우)
 - 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였는지 여부
 - ③ (세무사인 경우)
 -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세무사로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세무사의 직무를 행하였는지 여부 및 교육이수 확인증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다.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확인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1.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센터장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별표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는 일종의 표준규약으로써, 동 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음

라. 수임대상지역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사무인력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등을 지정”하여 인가신청
 - 전국을 포괄하거나, 보험사무 처리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지역은 수임대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지부 또는 지점이 있는 등 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을 수임대상지역으로 인가 가능
- ※ 보험사무 처리능력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무 공간, 기기 및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지 여부 확인

마. 인가서(불인가 통지서) 교부

-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서 또는 불인가 통지서 교부
 - ※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짐

제3장 인가내용 변경 및 업무의 폐지

1 인가내용 변경

가. 변경인가 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인가 신청
 -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임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나. 변경신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변경신고
 -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례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점 인가시 수임사업장 승계 가능 여부

보험사무위탁계약은 보험료징수법의 규율을 받아 보험가입자와 특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이 아님) 간에 체결되는 법률관계이므로 동일 법인내에서 기존 인가된 본점 보험사무대행기관(A)과 보험가입자 간에 체결한 보험사무위탁계약의 효력은 별도 인가된 지점 보험사무대행기관(B)에 승계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사무위탁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3자간(A, B, 보험가입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별도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B)이 기존에 지점으로서 관리하였던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사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례 보험사무대행기관 합병시 승계 여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나, 서로 다른 두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설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자동 승계는 불가한 바, 기존 수임사업장은 사무수임해지신고 후 신설(흡수합병) 법인으로 새로이 사무수임신고하여야 함

사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존속여부

공단으로부터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서로간 별개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험사무를 위탁하였던 사업장을 대표자가 이동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의로 보험사무를 계속하여 대행할 수 없음.

2) 업무의 폐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공단에 신고
 -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제4장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및 승인



1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가. 토탈서비스 회원유형

- ① 사업장 회원 : 사업장(개인·법인), 사업장대리인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공동대표, 소속직원
- ③ 의료기관 회원 : 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관 대리인
- ④ 개인 회원 : 재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개인, 심사청구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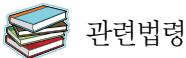
나. 가입절차(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

-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공단에서 인가후 인가번호 부여
 - ②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신청 : 회원유형[보험사무대행기관] 선택후 회원가입
 - 회원자격 : 대표자, 공동대표, 소속직원(고용보험피보험자)만 회원가입 가능
 - 인가번호 검증 :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업장정보(대표자·공동대표·고용보험피보험자) 및 인가정보(대표자)와 회원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검증
 - 보안서약서 : [필수첨부서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스캔파일로 첨부
- ※ 공인인증서는 회원승인후 최초 로그인시 등록 필요

2 토탈서비스 회원승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회원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회원가입 완료

제5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보험료징수법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0호, 2015.1.1. 시행)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토털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함)을 위임사업주에게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지급
 - ※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자진신고사업장만 지급됨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연 2회)
 - (납부실적 산정) 해당 반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 중 100분의 80 이상 납부하여야 함
 - ※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의 1/2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신고,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세변경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함)를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4건 이상 신고시 4,000원 추가)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 (신고실적 산정)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신고등 신고실적이 있는 경우 만 지급하되,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건으로 봄
 - ※ 동일 분기에 동일인에 대한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건으로 산정
 - ※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별로 월에 1건으로 산정

□ 보수총액 신고

-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임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지급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상시근로자수 규모	신고기한	지원금액	지급시기
5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18,000원	연 1회
5-30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24,000원	연 1회
소멸보수총액신고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10,000원	소멸시 1회

※ 소멸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원

다.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지급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한쪽만 성립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
- (지급시기) 최초 성립시 1회

라.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 (지급조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소기업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월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
- (지급시기) 연 1회

□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조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소기업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최초 1년까지 지급)

2) 신청기기 등

가. 신청시기

-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급 신청
 ※ 실무상으로는 지원금 산정자료 일괄구축 등으로 매분기 말일부터 약 1.5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나. 지원제한

-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계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100분의 50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소멸시효

- 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 ② 시효의 기산일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항에 따라, 지원금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라. 기타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3 지원금 지급신청

가. 전자신고

- 토탈서비스 >>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 지원금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신청
 - 공단산정자료 조회 : 공단산정자료를 기본 제공하여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토탈서비스 화면상에서 지원금 신청명세 확인 가능
 - 지원금 조정 · 추가 : 지원금 신청명세를 조정 · 추가할 수 있음
 - 신청명세 다운로드 · 업로드 : 필요한 경우 신청명세자료를 엑셀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가능
- ※ 지원금 종류별로 각각 지급신청하여야 함

나. 서면신고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단(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접수
 - ※ 첨부서류 : 지원금별 세부 신청명세자료 제출 필요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자료, 신고·보고 사항 등을 요청 또는 통지하는 경우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통지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2 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함
 - ※ 자진신고인 위탁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2,3,4분기 납부서는 공단 본부에서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발송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장에 납부서 전달 및 납부 독려
 - ※ 부과고지인 위탁사업장의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함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3.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음

④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 · 점검

- 소속기관장은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 장부 · 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 점검을 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도 · 점검한 경우에는 지도 · 점검내용을 전산입력 · 관리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외의 건의사항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함
 - ※ 지도·점검 관련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계획 수립
- 지도 · 점검결과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가취소,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1 인가취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8조)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 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②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77조제3항 별표4)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인가취소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인가취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3.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의한 청문절차에 따라 실시함

2 경고 · 주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77조제3항 별표4)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경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별표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 기준 제1호 제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외에 별도 대행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단,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15일 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주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별표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 기준 제1호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월 이상 6월 미만 기간 동안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15일 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 될 경우 각각 처분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회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77조제2항 별표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회 수 기 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0호 서식의 사무위탁서(이하 "사무위탁서"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 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위임사업주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위임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자와 사업주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 받아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6.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7. 기타 착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 회수기준에 따른 회수액 통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즉시 해당 회수금액을 반납계좌 또는 고용·산재기금 수입 국고계좌로 납부

제8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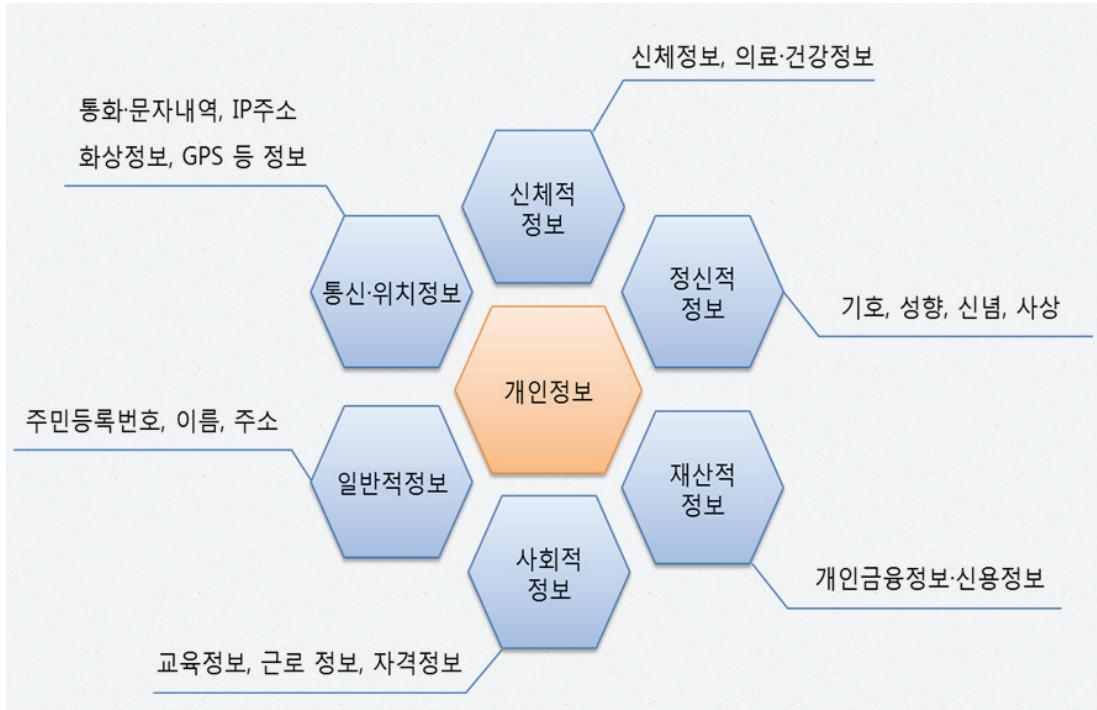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개인정보의 주체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
 -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임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
 -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은 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음

어떠한 형태의 정보든 살아있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예 》



2 개인정보의 처리

가.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됨

나.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 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 근하여 처리하는 모든자를 말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취급자가 됨

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본원칙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의 저장 · 관리)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 · 관리하여야 함

- 관리적 측면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물리적 측면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기술적 측면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번호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 보유시 관리수칙

- 비밀번호는 분기 1회이상 변경
- 인사이동 시 PC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9자리 이상 사용
- PC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나 파일 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수기 문서 보관시 유의사항

- 일과 후 개인정보 기록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관
-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수기 문서는 즉시 파기(이면지로도 사용 불가)

③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고객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조회 등 이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열람해서는 안됨

④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

▣ 민감정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 : 사상, 신념, 정당, 정치적 견해, 병력,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

▣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예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

5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인가취소”할 수 있음



관련법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중간 생략>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중간 생략>
-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제9장 관련 고시 및 규정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I.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하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에게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1)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 및 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피보험자신고등을 4건 이상 한 때에는 4,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건으로 본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임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연 1회 지급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으로 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24,000원으로 한다.

다. 적용촉진장려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을 최초 성립 시 1회 지급한다.

2.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

가.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44조제1항(다만,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적용촉진장려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연간 4회까지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7년 12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2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6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 및 영 제44조제1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법인이 각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 또는 지점별로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부 또는 지점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인가할 수 있다.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한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의 지사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한다.

③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한 때에는 관련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인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인가시 확인사항) ①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및 영 제44조제1호에 따른 법안단체: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및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 영 제44조제2호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였는지 여부〈개정 2014.11.5.〉
3. 영 제44조제3호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세무사로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세무사의 직무를 행하였는지 여부 및 「교육이수 확인증」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개정 2014.11.5.〉

② 지사장은 영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를 참조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센터장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5.〉
- ③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무공간, 기기 및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사무 위임)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에 둘 이상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① 영 제4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처리 해야 할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 등 법 제16조의10에서 정하는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3.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5.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
 6.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탁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험사무 처리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신청
 2. 실업급여 신청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4. 실업자재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제70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에 따른 사무처리)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받은 지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 수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험사무위탁서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보험사무대행기관별로 전산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험사무 수임해지신고서”를 접수한 때(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가 폐지되거나 그 인가를 취소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에 따라 수임 처리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수임해지처리하고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지사장은 보험사무의 수탁 또는 수탁해지 신고사항을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 관할지역내 사업장의 보험사무 위탁 및 위탁해지 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임채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가입자(또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또는 임금채권보장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수탁에 대한 보험가입자(또는 사업주)와 사무대행기관간의 해지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71조(보험사무대행기관장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지사장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장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등의 납부 실적
 2. 보수총액 신고 실적
 3. 위임사업주의 규모
 4.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실적
 5. 위임 기간
- ②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장지원금의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

청을 받은 지사장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지사장은 제3항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우선지원) ① 지사장은 보험제도의 안내 책자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보험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자료, 각종 서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관리)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된 사업주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미신고 사업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 부과하여야 한다.

제7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한 각종 자료, 신고·보고 사항 등을 요청 또는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7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에 따른 조치) 지사장은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산입력하고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탁 사업 사업장 중 관할지역내 위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관할지역외 위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 및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① 지사장은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도·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내용을 전산입력·관리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외의 건의사항은 자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등) ① 지사장은 법 제33조제5항 및 영 제48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를 회수하고 취소에 따른 보험사무를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경우 별표4의 인가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보고)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인가(변경포함)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OO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 내지 제54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위임사업주”라 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령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한 보험가입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의 효력 등) ①본 규약은 법,령 및 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에 법,령 및 규칙과 본 규약의 내용에 반하여 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령 및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제4조(보험사무의 위임)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험사무 일체로 한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변경신고 등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사항
4.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임사업주의 소속하에 있던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문의 및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제5조(위임할 수 없는 사무 등) ①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와 고용보험법의 지원금 및 보험급여의 청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다.

② 보험료는 위임사업주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할 수 없다.

제6조(보험사무의 위임절차) ①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위탁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보험사무위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임의 가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수임한 경우 위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에 기재 후 위임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의 해지)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는 그 당사자 일방이 법령 또는 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7일전까지 보험사무위임해지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해지의 제한)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연도 중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사무위임을 해지할 수 없다.

제 3 장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제9조(보험사무의 처리 등)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등 각종 보험사무처리 관련 통지 등을 당해 위임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 성립신고)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지역본부)에 성립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여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성립신고서 접수 후, 추가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위임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위임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총액 등의 보고) ① 위임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일 또는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일로부터 10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에 지불한 보수총액 및 금년도 중에 지불할 보수총액의 예상액
3. 전년도에 고용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고용 종료일, 전보일, 보수총액
4.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수
5. 기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로부터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일괄적용사업의 보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사업에 관계되는 위임사업주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2. 예정되어 있는 건설공사별 사업기간
3. 총공사금액
4.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사항 등

제13조(피보험자격 변동 등에 관한 보고) ① 위임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출입, 성명변경 등(이하

“피보험자의 변동”이라 한다) 또는 위임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명칭변경, 주소변경 등(이하 “사업주의 변동”이라 한다)을 관련신고서의 제출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이하 「사무처리장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신분변동 또는 사업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무처리장부에 기재하고 즉시 당해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직확인서에 관한 보고) ① 위임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 이직전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동화인서 제출 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의 신고)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험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위임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독촉을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 <삭 제>

제 4 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호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진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8조의2(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5.>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3(대행수수료 수수금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 계 및 감 사

제19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대행에 따르는 별도의 계정 및 항목을 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년도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로 한다.

제21조(감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보험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2조(규약의 제개정 등) ① 본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정내용 등 관련사항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본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1 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

○ 소속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대표자명 :

○ 서약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남/여) :
- 연락처(핸드폰, 전화번호) :

위 서약자 본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제10장 관련 서식



연 번	서 식 명	용 도
1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 위탁계약시 사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수탁) 해지 통지서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 위탁계약 해지시 사용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사무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시 사용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시 사용
5	보안서약서	보험사무대행기관 담당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
6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인가통지시 사용
7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불인가통지시 사용
8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
9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사용
10	체납사업장 보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시 자진신고사업장의 체납사업장 보고서 첨부
1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인가취소통지시 사용
12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개별 수임사업장에 대한 징수업무 처리사항 작성시 사용
13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피보험자사무(취득, 상실 등) 처리사항 작성시 사용
1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시 사용
15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사실 통지시 사용

▶ 상기 서식 및 그 밖의 서식은

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서식자료찾기] 바로가기메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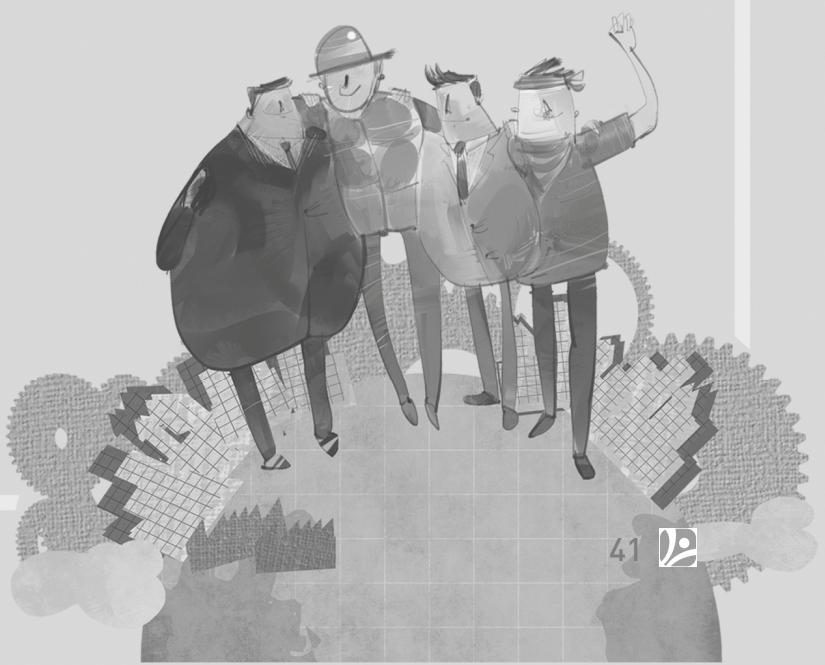
또는 [정부3.0정보공개] –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1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특성

-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③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
-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2 고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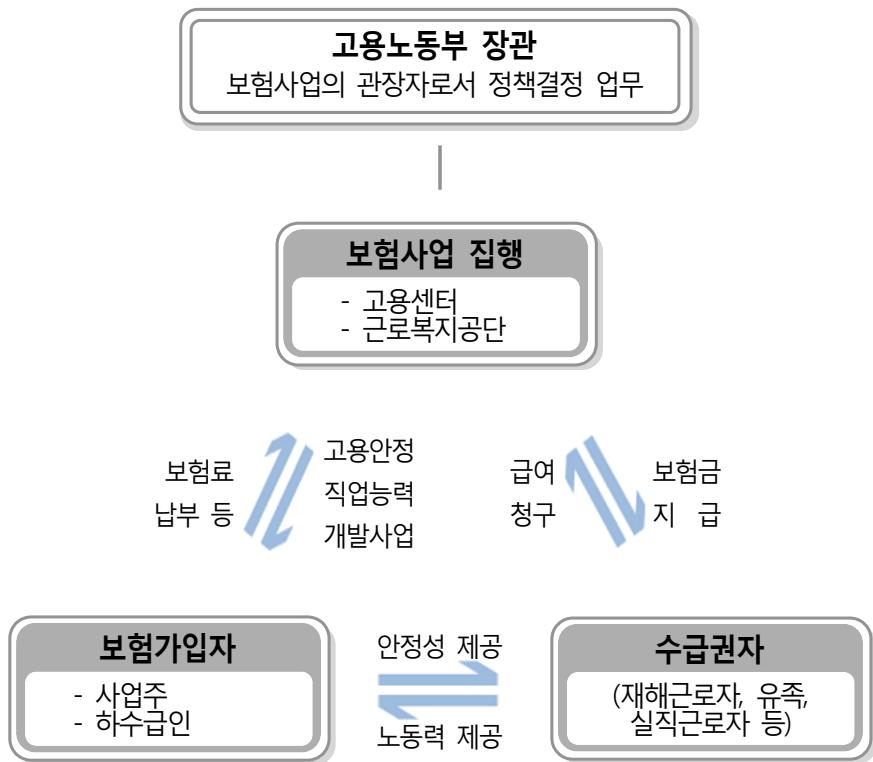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 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주요 사업

- ①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②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하는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고용보험사업 업무분담 체계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적용 · 징수업무
- ※ '11. 1. 1. 부터 산재·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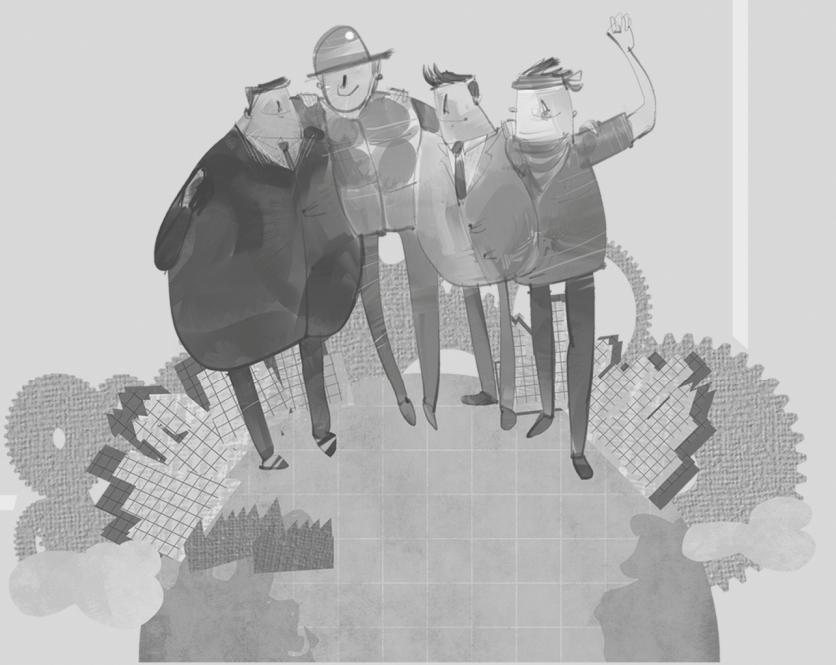
제3편

산재·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1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2장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

제3장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및 소멸



제1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1 가입대상

-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근로자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특례가입방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은 특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

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임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 기업 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함)
-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거주(F-2) 및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28. 동 반(F-3)	×
13. 일반연수(D-4)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4. 취 재(D-5)	×	28의3. 영주(F-5)	○(강제)
15. 종 교(D-6)	×	28의4. 결혼이민(F-6)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 ①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② 「청원산림보호지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지원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④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은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3 보험가입자

가. 보험가입자의 범위

-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 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 가입자가 됨.
- ※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대리인의 범위

- * 대리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준용
 - 법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보험사무대행기관
 - 개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보험사무대행기관

나.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1) 승인요건

- 건설업
-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제출
 - ※ 다만,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도급공사의 착공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 불가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2)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제2장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가. 계속사업

-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즉 “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

나. 건설업

- 건설업 등의 건설업자인 경우 동종사업일괄적용제도에 따라 “사업” 단위로 판단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 총공사를 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사업장) 단위로 판단

■ 생산제품 설치특례

(1) 정의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2) 요건

-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할 것
- ③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벌목업 등 사업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각 기관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분리 적용하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일괄적용 대상임

2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
 -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가입대상에 해당

【적용제외 사업】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p>① 농업·임업(별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p> <p>② 가구내 고용활동</p> <p>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p> <p>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p> <p>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p> <p>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p> <p>⑥ 제②호부터 제⑤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p>	<p>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p> <p>② 가사서비스업</p> <p>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p> <p>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p>

가. 계속사업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 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면 최초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일 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 적용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총공사금액과 연면적이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적용대상으로 판단
 -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당연 적용대상
 - ※ 연면적은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3 임의가입사업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된 사업을 말함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3장 보험관계의 성립 · 변경 및 소멸

1 보험관계의 성립

가.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당연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해당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제출서류*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별목업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별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별목허가서
제출기한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건설공사 및 별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근로자 고용신고서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의제가입사업

-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다.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당연 일괄적용의 요건

-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3) 임의 일괄적용의 요건

-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② 산재보험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함

(4) 보험관계의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 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5) 일괄적용의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개시신고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2 보험관계의 변경

가. 보험관계의 변경

-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변경내용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합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상시근로자 수 변경은 보험 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험관계의 소멸

가.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해당 보험 연도 종료 후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험관계의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멸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멸일 :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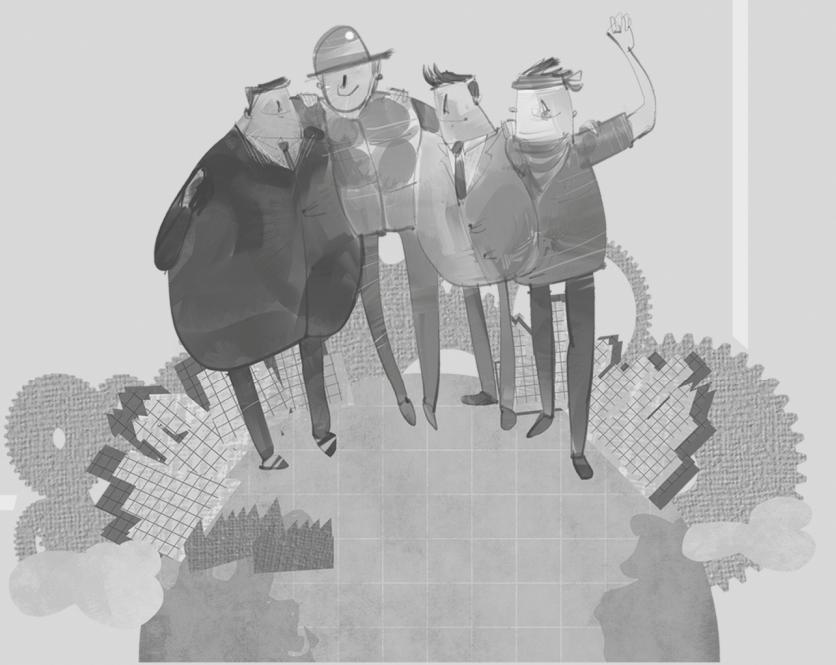
-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1부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해지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1 근로자 고용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2) 근로자 고용정보는 보험료 산정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유	고용일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
2	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3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4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6	고용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날
7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나. 신고 내용

-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2)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3)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4)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해당자만 기재)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최초로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 (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Q

근로자가 2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에 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A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6	기		관리번호 : C (건설업 : 자진신고)
7	경		
8	신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갑, 을, 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A (건설업 : 자진신고)	
2	을		
3	병		
4	정		
5	무		
6	기		
7	경		
8	신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경, 신

라. 신고서 작성 방법

- (1)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2) 근로자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구분에 V 체크
 -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V 체크
 -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시 1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V 체크(예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 해보상보험법 적용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산재 · 고용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V 체크

(3) 근로자 고용신고 시 월평균보수는 아래 금액을 기재

- 고용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4) 자격취득일(입사일)은 근로자 고용일 기재

※ 산재보험 고용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5) 산재·고용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는 보험료부과구분란에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해당번호를 각각 기재

부호	부과범위				사유(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직능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24.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56	x	x	O	x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해당보험에 고용(취득)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범위를 말함(O표시 되어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현장실습생(52-03)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산재 특례자만 해당됨

2)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2) 다음의 경우 공단에 그 고용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유	고용종료일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날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산재보험 적용근로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적용 제외된 날
4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대상사업에서 자진신고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5	국내성립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6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나. 신고 내용

- (1)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3)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2014.6.11.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소멸일 : 2014.6.12.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14.6.25.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기한 : 2014.7.15.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14.6.25.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사업장의 2014년 6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14. 7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됨. 『보수총액신고서』가 나중에 제출 되면 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라. 신고서 작성 방법

- (1)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를 경우 다른 장에 기재
- (2) 상실연월일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일을 기재
- (3)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근로자 고용종료일이 속한 연도 초일부터 고용종료일 전일까지
발생한 보수를 기재

※ 근로자 고용종료 시 월별보험료는 고용종료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 되며, 보험료정산은 다음연도
3월 15일(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됨

3) 근로자 전보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관리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 ※ 주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2)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3) 전보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보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해야 함
- (4)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Q

전보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 ※ 휴직 등의 신고는 산재·고용보험 모두 공단으로 신고해야 함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휴직사유 등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모두 부과되지 않음)
- (2)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부과됨.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가 부과됨
 - ※ 보수총액신고 시 휴업·휴직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 산입 여부 :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
-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누락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이후에만 신고 가능
- (4) 휴직 등의 신고 사유
 -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호 휴가
 - ④ 노조전임자
 -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단,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 신고대상이 아님
 - ⑤ 기타

Q

휴직자에 대해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 휴직기간의 보수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되지 않습니다.

Q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 또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정보 변경 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 (1)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전보신고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 (2) 근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6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 (2)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매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 ex) 2015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한 장에 신고 할 수 없음(파일 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별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 (3)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 (4)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한 경우 해당 근로자만 해당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
- (5)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고용종료) 신고 대상임
 - ※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보수총액만 신고할 수 있음

사례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 신고 방법

갑을상사에서 2015.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자 A의 근무 일수가 5일, 보수총액을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보수총액을 6일, 600,0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5.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수정 분으로 기재한 후 근로자 A(해당 근로자만 정정신고)의 근무 일수(6일) 및 보수총액(600,000원)을 재신고

Q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Q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일당 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 사업장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 통보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사업자 등록증이나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 대상입니다.
- 따라서 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1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

가.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 항목

(1) 산재보험 : 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정보의 정정은 사회보험별 보장자격 등의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정정은 각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2) 고용보험 :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단,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로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의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 보험료부과구분 자활 근로자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하나, 고용보험의 휴직 및 보험료부과구분의 정보 정정은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보이므로 보험료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함

※ 65세 이후에 새로이 자격취득 되었으나 사업장의 인수 · 합병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된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대상이므로 고용승계 근로자는 보험료 부과구분부호를 59-23(65세 이상 고용승계)로 정정 처리

나.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방법

(1) 서면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2) 고용정보 정정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고용정보 정정업무는 공단의 고유업무이므로 타기관 EDI를 사용할 수 없음

다.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 시 정정 신청

(1)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의 경우(일반근로자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노조전임자) 공단에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정정신청 해당 없음(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모두 부과됨)

(2) 변경일에는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신분변동일을 기재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 시에만 변경일을 기재. 그 외 정보 정정신청은 고용일부터 정정처리 되므로 별도로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음

2 근로자 고용정보 취소 신청

가. 근로자 고용정보 취소 신청 항목

(1) 근로자 고용신고 취소신청,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취소신청, 근로자 전보신고 취소신청,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취소 신청

※ 고용정보의 취소는 사회보험별 보장자격 등의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의 취소는 각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고용정보 취소 신청 방법

(1) 취소신청서 통합서식에 취소하여야 하는 고용정보 항목 체크
(휴직 등 신고 취소는 별도 서식 사용)

(2) 취소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ex. 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인 선원인 경우 선원수첩 등 선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면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4) 고용정보 신고 취소 신청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고용정보 취소업무는 공단의 고유업무이므로 타기관 EDI를 사용할 수 없음

제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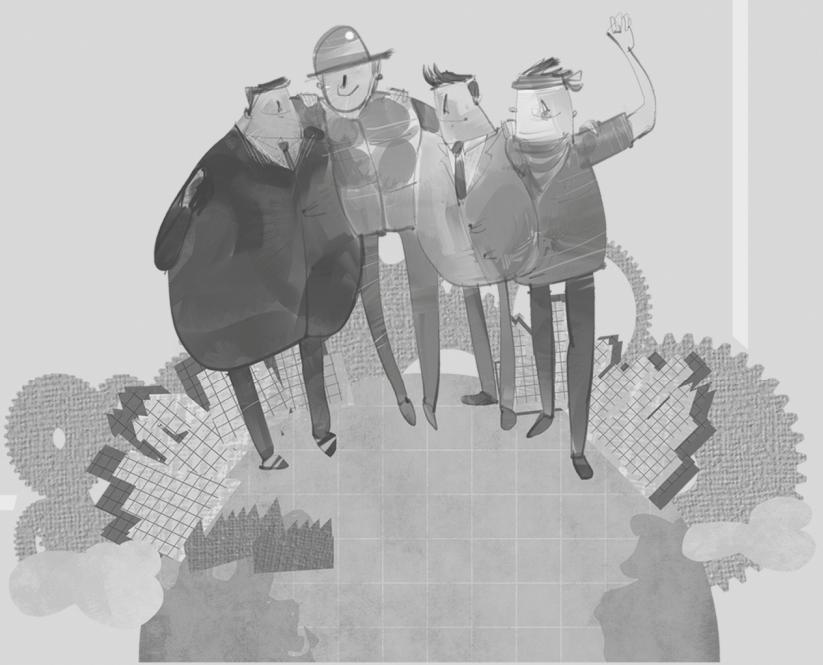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4장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제1장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기준

가.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¹⁾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²⁾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가. 산재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시함
 - ※ '15년 보험료율은 58개 업종에 최저 7/1000에서 최고 340/1000, 평균 17/1000으로 결정 고시

1)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정부3.0정보공개-자료마당-실무자료-산재보험료율-검색창(예: 2015년 산재보험료율)에 게재

○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별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11. 4. 1이후		'13. 7.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0.45%	0.45%	0.45%	0.45%	0.55%	0.55%	0.65%	0.65%
고용안정		0.3%		0.15%		x		x		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45%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5%		0.5%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7%		0.7%		0.85%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 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的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i) 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ii) 총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 분류	분류기호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00명 이하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	I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부동산업 및 임대업(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위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개정 2013.1.25.)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보험료 부담의 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의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함

(2) 적용요건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 ※ 법령개정에 따른 적용 확대

◎ 2016년부터 적용 규모 확대

건설업·별목업 외: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 10명 이상

건설업: 2년 전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 20억 이상

(3) 산정방법

-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① 기준 보험 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보험료액)

② 기준 보험 연도의 직전 2개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의 합계액

③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 보험 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 × 6 / (기준 보험 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text{개별실적요율} = \text{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pm (\text{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times \text{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보험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산재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출되어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와 소음성 난청 그리고 석면으로 인한 질병,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만약,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

(4)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확대

◎ 2016년부터 적용 규모 확대

건설업 · 벌목업 외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 10명 이상

건설업 : 2년 전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 20억 이상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라. 산재예방요율('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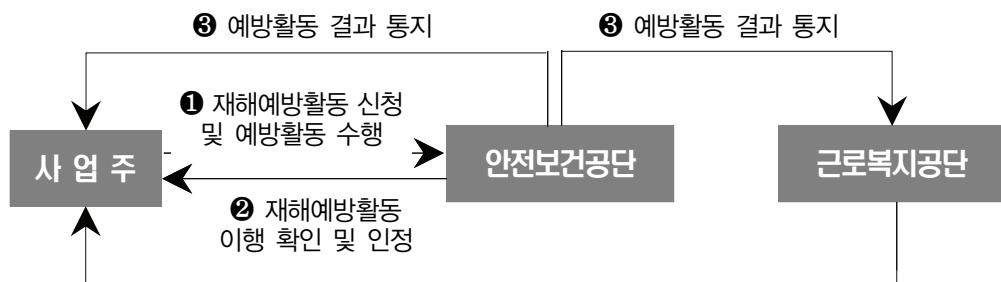
○ 개별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 '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2)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 보험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3)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①) : 사업주
-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통지(②, ③) : 안전보건공단
-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 · 통지(④) : 근로복지공단

(4) 재해예방활동지표

구분	내 용	인정 유효기간	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자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인정일로부터 3년	20%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인정일로부터 1년	10%

*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높은 인하율 적용

사례 2015년도 산재예방요율 적용

1. 2014. 4. 1.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인하율 = $10\% \times [275일(2)/365일] = 7.5\%$
 ① 예방활동지표(교육) 최대 인하율 ② 2014년 예방활동 인정기간(4.1.~12.31. 동안의 일수)
2. 2015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7.5%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7.75/1000
3. 2015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라 7%가 인하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4.5%(예방요율 7.5%+개별요율 7%)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5.65/1000

☞ 산재 예방요율과 관련하여 재해예방활동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으로, 산재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5)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취소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의 목적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일부터 취소대상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인 경우에는 사업종류변경적용일 이전 까지 적용, 변경적용일 이후부터 취소

마.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정수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함
- 사업주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

(나) 부담금 비율

-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시

'05년 ~ '09년	'10. 1. 1부터
0.4 / 1,000	0.8 / 1,000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25%(0.2/1,000)('10.12.1.부터 '12.12.31.까지)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기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 개월분의 휴업 수당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바.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목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하였고, 이에 2011.1.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과대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과함
 1.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본사는 상시인원과 관계없이 부과)
 2. 건설업사업주(사업의 당연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
 - 위 각 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2015년도 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상시근로자 산정

- 석면피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함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변경 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보아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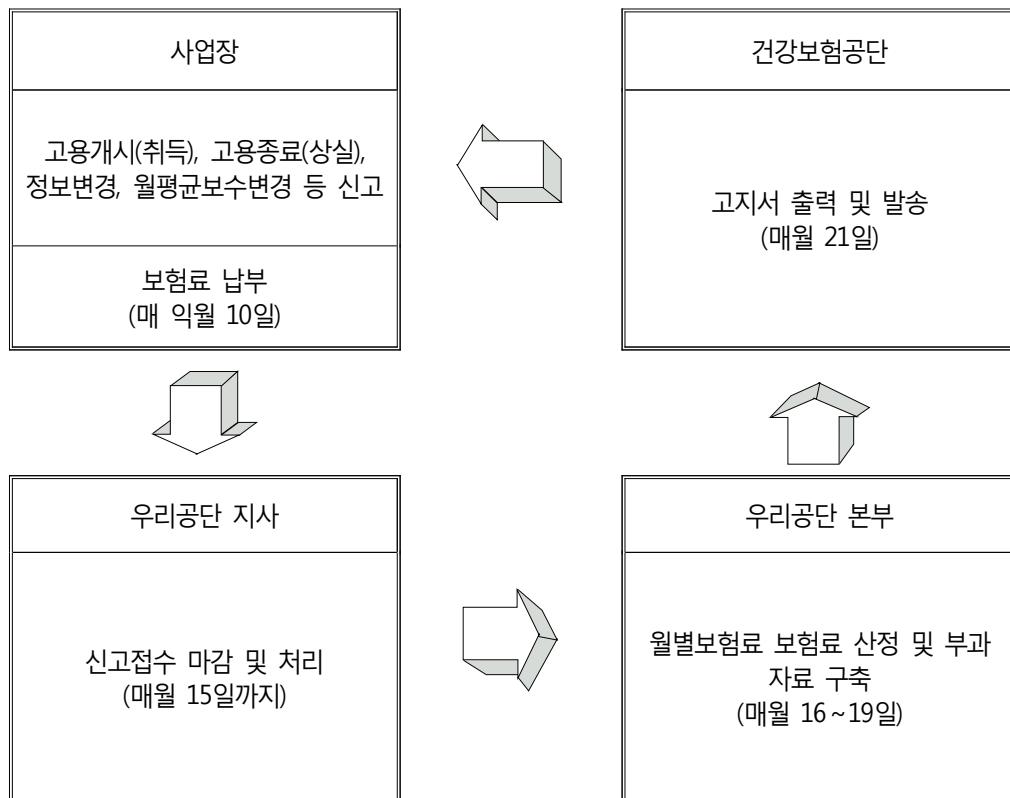
1 월별보험료 부과

가. 개념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

$$\text{월별보험료} = (\text{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times \text{보험료율}) \text{의 합계}$$

나. 업무 절차



다. 월별보험료의 일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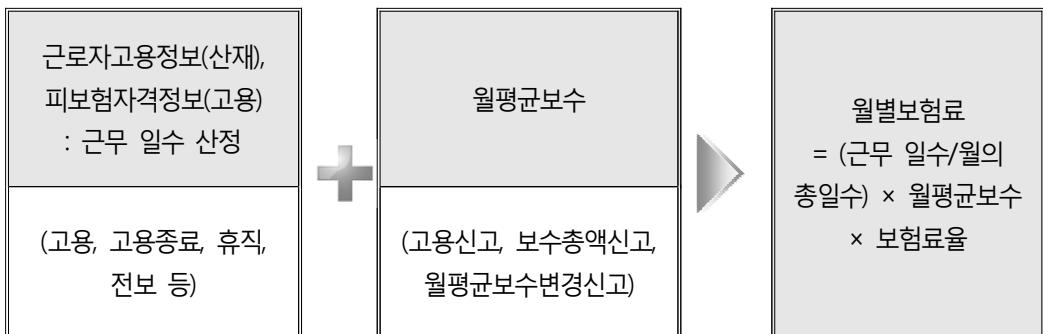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달의 근무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text{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text{월평균보수} \times (\text{근무 일수}/\text{월의 총일수}) \times \text{보험료율}$$

라. 산재보험 고용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월별보험료 부과 관계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관계 정보(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일, 휴직 종료일 등)에 따라 근무 일수를 산정하고, 월평균보수 정보로 근무 일수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정보를 활용함(별도 신고 없음)
-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전보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휴직 기간은 부과하지 않음(단,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는 고용보험에 한해 정산보험료 산정)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 기초 자료】



마.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 총액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
- 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일용근로자 보수 및 고용정보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단, 연도를 소급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소급 정산됨에 유의)

사례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 김OO의 2015년 4월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5					1									

- ▶ 총 지급받은 보수총액 : 650,000원, 근무 일수 : 6일
- ▶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20/1000인 경우
2015. 4월 김OO의 월별보험료 $650,000 \times 20/1000 = 13,000$ 원

바.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의무 면제자(그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산재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가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나, 고용정보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을 전년도 사업장 보험 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 부과

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사업장 보험가입월수)×보험료율

-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 그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에도 해당연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 다음달부터 그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

Q

부과고지사업장 월별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A

- 부과고지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등 고용정보 또는 월평균보수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월별보험료의 금액은 전월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시 근무 일수는 그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나요?

A

- 사유발생일(고용일, 고종종료일, 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등)부터 그달의 말일 또는 그달의 초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월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근무일(출근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보험료의 정산

가. 개념

-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해당 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산정·부과한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 정산결과 기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의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에 부과·고지함

나. 정산시기

- 정상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 소멸사업장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을 신고

다. 정산대상

-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고용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는 개인별 보험료 정산
 - 일용근로자 및 고용정보가 없는 상용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보험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정산

라. 업무절차



Q

연도 중 보수의 인상 및 인하 없이 보수총액이 그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험료율도 변동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정산 결과 차액분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월보험료는 근로자 월별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정산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산출하므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수총액신고

가. 보수총액신고서 기능

- 월별보험료의 정산
 -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사업장에 확정된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추가 징수, 충당, 반환)
- 월평균보수의 산정
 - 전년도 9.30.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나. 신고기한

-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 ※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기한 : 2015. 3. 16.(월)
- 사업의 폐지 ·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신고방법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만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전산처리 테이프, 디스켓 또는 CD(Compact Disc)를 이용하여 신고(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규정된 포맷사용)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신고 방법은 1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
 - 보수총액신고서 서면 신고 가능

라. 보수총액신고 관련 유의사항

- 보수총액신고는 전자신고(인터넷 또는 CD를 이용한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 가능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는 근로자 정보 조회 가능
('15. 3. 31까지는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서 우측상단에 표시된 "임시아이디"를 사용하여 신고 가능)
- 전년도에 이미 퇴사(고용종료)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함
-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는 구분하여 각각 신고
-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틀린 경우 별도 변경 신고
 - 사업장정보가 틀린 경우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
 - 근로자 고용(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추가 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고용신고서」(산재보험)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보험) 제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이 틀린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국번없이 1350)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공단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전년도 근로자(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등 모두 포함) 사용이 없어 지급된 보수총액이 없는 경우에는 「□ 2014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V표시 신고
-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 ※ 전보이전 사업장에서는 고용종료(상실)일이 전보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는 고용(취득)일이 전보일에 해당

-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제외, 고용보험은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사업장은 「⑨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별도 작성
-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은 신고서 뒷면에 별도 작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 정산보험료 추가 고지는 4월 월별보험료 부과 시 합산되어 부과
 - 정산보험료 금액이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는 2분할 되어 1/2씩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분할고지 되며, 분할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분할고지 미희망」에 V표시

※ 4월 월별보험료가 없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분할고지 되지 않음
- 보험료 정산결과 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2015년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충당(선납 충당)하거나, 반환계좌(법인의 법인명의, 개인은 개인사업주 명의만 가능)로 반환처리

마.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신고사유
 -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하여야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신고 한 경우
 - 매월 말일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거나 착오신고 한 경우
- 신고기한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단이 이를 조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기 전

Q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대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도 건강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 소득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전년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나요?

A

- 전년도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은 보수총액신고에 의해 정산되므로 퇴직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산재·고용보험료는 개인별 퇴직정산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처리 시 개인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4

2014년도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안내

[‘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관련 달라진 주요내용 안내]

1. 2014. 1. 1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단,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는 공단에서 자동 구분, 일용근로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구분하여 별도 서식 발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작성 예시>

- 2014년도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 5,000,000원이고, 그중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이 350,000원인 경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산재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⑤ 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5,000,000	5,000,000	350,000

2.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부터는 월평균보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년도 9.30일 이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상의 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정보를 기초로 월평균보수가 산정됩니다
- 월평균보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별도 제출
단, 급여의 인상·인하로 인한 월평균보수변경 시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적용

가. 보수총액신고서 세부 작성 요령

[사업장 현황]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클서비스(total.kcomwel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임시아이디 *****	작성자명	(전화:)
관리 번호	사업장 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팩스 번호	

※ 사업장현황은 공단에 가입된 사업장 정보가 미리 적혀 있습니다.

- 작성자명 및 전화 : 공단에서 업무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임시아이디 : 토탈서비스 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15. 3. 31.까지는 “임시아이디”를 사용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 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 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 총액(원)

※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항목만 적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미리 적혀 있습니다.

공단에서 미리 제공하는 정보

-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표시

※ 보험료부과부호가 틀린 경우「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변경한 후에 새로운 보수총액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 급여	고안· 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 노조원(임채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 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O	O	O	O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 (취득일) 근로자 고용일(입사일),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
- (상실일) 근로자 고용종료일(퇴사일의 다음날),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 서는 전보일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항목

- ②, ③(연간보수총액) 2014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Tip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⑯-11, ⑯-14, ⑯-15, ⑯-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단 휴직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단순히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④, ⑤(일용근로자)

- 일반사업장

일 용 근 로 자 보 수 총 액	④ 산 재 보 험	⑤ 고 용 보 험

- 2014년도에 사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서식 ① ~ ③ 작성대상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일용근로자 보수만 작성

Tip 일용근로자란?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지급받으며 단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이고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대상이며,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해당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별도 서식 발송)

일 용 근 로 자 보 수 총 액	④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일 용 근 로 자 전 체	⑤ 일 용 근 로 자 전 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④(산재보험),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는 2014년도에 사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서식 중 ① ~ ③번의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일용근로자 보수만 작성

- ⑤-1(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안내

- 실업급여 보험료 :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에서 ⑤-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뺀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해당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우리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관할지사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⑥(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⑥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	--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별 보수총액(①~③) 일용근로자보수총액(④~⑤), ⑤-1과 구분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⑦(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

⑦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	--

-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별 보수총액(①~③) 일용근로자보수총액(④~⑤, ⑤-1)과 구분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별보험료 부과 방법

- 2014년도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2014년도 가동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2015년도 월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⑬(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

※ 해당근로자 있는 사업장만 별도 서식 발송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 (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 연도 중에 보장 자격이 변동(급여특례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되는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 : 연도 중에 노조에 일정기간 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작성합니다. 이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을 작성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조전임기간과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조전임자가 있었으나 보험료부과구분부호 미신고 또는 착오신고로 별도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변경한 후에 우리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관할지사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활근로종사자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 자활근로종사자 김OO의 2014년도 보수지급 및 보장자격 변동내용
 - 2014. 2~6월 5,00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산재보험 부과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과제외)
 - 2014. 7~12월 6,800,000원 차상위계층 (산재보험 부과대상, 고용보험 두 사업 모두 부과대상)

▶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성명	①보험료부 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김OO	54	14.2.1.		11,800,000	14.2.1.		6,800,000	11,800,000

사례**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노조전임자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 노조전임자 이△△의 2014년도 보수지급 및 보장자격 변동내용
 - 2014. 1~6월 8,000,000원 비전임기간 (산재보험 부과대상, 고용보험 두 사업 모두 부과 대상)
 - 2014. 7~12월 6,800,000원 노조전임기간 (산재보험 부과제외,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과 제외)

▶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성명	①보험료부 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김OO	56	13.2.5.		8,000,000	13.2.5.		14,800,000	8,000,000

※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다른데 유의

○ ⑨(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⑨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업종변경 후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②합계액+④+⑥+⑦)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도 중 업종 변경 사업장은 변경 전후 일자가 미리 적혀 있습니다. 해당사업장만 적습니다.

[기타 신고 항목]

-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⑧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④,⑤) 및 그 밖의 근로자(⑥,⑦)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④~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서식 ①~③ 제외한 근로자)

- ⑩(2014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⑩ ()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 2014년도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 사용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미제출시 불필요한 제출 안내를 받게 되고, 보험료가 직권부과 될 수 있으니 근로자 사용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사용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보험 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⑪(과납보험료 충당 또는 반환 선택)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1곳에만 √ 표시)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2014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2015년 발생하게 될 월별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는 선납충당에, 바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환에 √표시하고, 반환신청 시에는 반환계좌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반환계좌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2014년도 보험료 정산결과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는 토탈서비스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 (안내책자 참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⑫(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⑫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 금액이 크더라도 한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선택하는 칸입니다. 정산보험료가 분할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표시가 없는 사업장은 정산보험료 추과부과금액이 4월 월별보험료 금액이 큰 경우 2분할 하여 4월과 5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5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월평균보수 신고방법
전년도 9.30.이전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		사업주 별도 신고 없음 (보수총액신고서상 보수 및 고용정보로 공단에서 산정)
전년도 9.30.이전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전년도보수총액/전년도근무 일수) ×(전년도 근무 일수 – 고용월 근무 일수)}/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 수	2015년 4월 ~ 2016년 3월	
전년도 10.1.이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이내인 경우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12개월(1년 이내인 경우 해당근무개월 수)	고용일이 속한달 ~ 2016년 3월	근로자고용(취득) 신고 시 사업주가 직접 계산, 작성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전년도 근무개월수 12인 경우
 $10,000,000 / 12 = 833,333.333$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원 단위 미만 절사)

나. 월평균보수의 정정 또는 변경

1) 월평균보수의 변경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월별보험료 산정 시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
 - ※ 변경 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된 경우라도 신고서 제출일 다음달 월별보험료부터 적용

2) 월평균보수의 정정

-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변경사유를 착오정정으로 신고)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신고일과 상관없이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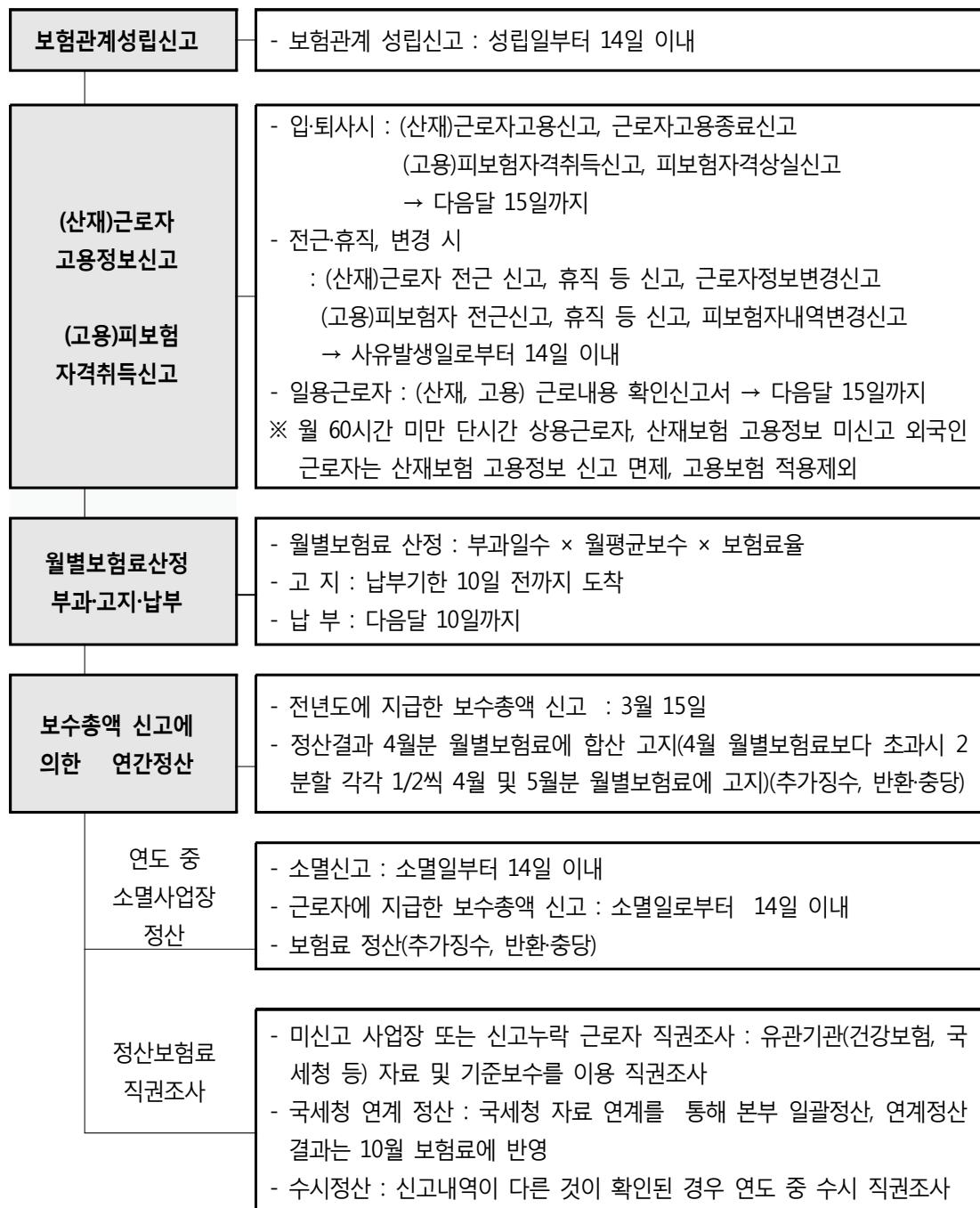
Q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 가능합니다.

⑥ 부과고지 사업장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업무 흐름도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별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text{개산보험료} = \text{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times \text{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text{개산보험료} = \text{총공사금액} \times \text{노무비율} \times \text{보험료율}$$

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 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 31.	3. 31.
제 2 기	4. 1. ~ 6. 30.	5. 15.
제 3 기	7. 1. ~ 9. 30.	8. 15.
제 4 기	10. 1. ~ 12. 31.	11. 15.

○ 보험 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3회로 조정
-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확정보험료

가. 의의

-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확정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text{확정보험료} = [\text{직영인건비} + \{\text{외주공사비} \times \text{하도급노무비율}\}] \times \text{보험료율}$$

※ 외주공사비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외주공사비)을 제외하고 산정

-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 :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 납부 주체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다.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 연도의 말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라.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③ 2015년도 산재 · 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가.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공사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 = 전체 근로자의 보수-대표자 보수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의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의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합니다.

나.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하도급 노무비율 ('15년 31%, '14년 32%)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다. 보험료신고서 세부 작성 요령

(1) 2014년 확정보험료

- ① 보수총액

❶ 항목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

※ 만 65세 이상 근로자 : 법 개정으로 2014. 1. 1부터 고용보험료 징수

구분	만 65세 전 고용된 자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실업급여	징수	미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징수	징수

- 2013년까지는 만64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만64세 이상자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 징수대상 이므로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차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예시) ① 고용일 : 2012. 9. 7. 생년월일 : 1947. 9. 22.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② 고용일 : 2014. 1. 10. 생년월일 : 1949. 1. 15.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③ 고용일 : 2014. 1. 20. 생년월일 : 1949. 1. 15.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는 미부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별지 제23호 서식]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체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공단담당자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 쪽)

처리기간 5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2014)년 확정보험료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2015)년 주정부업종 	구 분	신청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③-③)
	산재보험 (임금체권부담금 등 포함)	2014-01-01~ 2014-12-31			/1,000	④신고액	⑤납부액	충당액
	실업급여	2014-01-01~ 2014-12-31			/1,000			반환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4-01-01~ 2014-12-31			/1,000			
	계	-----	-----	-----	-----			

▼ 아래 ⑧번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⑩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⑩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015)년 주정부업종 	구 분	신청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부합납부부 여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분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산재보험 (임금체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000		[]일시납부부 []분할납부부		1월	영	원	영	원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000		[]일시납부부 []분할납부부		2월	영	원	영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000		[]일시납부부 []분할납부부		3월	영	원	영	원	
	계	-----	-----	-----	-----	-----	4월	영	원	영	원	
	※ 회적영업 등에 가입한 사업장을 별도로 부담금을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업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② 개산보험료를 ③ 보수총액 대비 제출하여 영업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④ 보수총액 ⑤ 대비 감소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 30% 초과 시 우 그로저 같은 [] 총액 그 밖의 사유.	1월	영	원	영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부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화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5월	영	원	영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6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7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8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9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10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11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12월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한계 월평균	영	원	영	원	영	원	영	원	

○ ③ 보험료

$$\text{③ 확정보험료액} = \text{① 보수총액} \times \text{② 보험료율}$$

*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2) 2015년 개산보험료

○ ⑧ 보수총액

- 2015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

사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의 산정

-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800만원이더라도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Rightarrow 800\text{만원} / 1,000\text{만원} \times 100 = 80\%$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사이)

○ ⑨ 보험료율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2015년도 산재보험료 일반요율 : 건설업 38/1,000, 건설업본사 10/1,000
- 2015년도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 0.8/1,000
-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4/1,000

$$\text{고용보험료율} = \text{실업급여요율} + \text{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⑪ 일시납부 및 분납여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 표시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면 3%의 공제 혜택 (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 표시하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4)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가. 의의

-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감액 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한 것
- 개산보험료 감소 규모가 이미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다.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나.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 수정신고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라.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마.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제4장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1 도입 배경

- 2011년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특례제도를 시행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보험료 경감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2 경감특례의 적용 및 부과 절차

가. 경감대상

- '11~'15년 보험 연도까지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의 비율이 115~125%를 초과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경감 대상

나. 경감률의 산정

- 2011~2013년 보험 연도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2014년 보험 연도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0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2015년 보험 연도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5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임금 대비 보수 비율은 '11~'13년도 115%, '14년도 120%, '15년도 125%

※ 단, 근로자 개별 경감률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률 산정

다. 경감 신청자

- (1) 사업장 경감 : 연도 중 또는 보험료정산 시 사업주가 신청
- (2) 근로자 개별 경감 : 보험료정산 시에 한하여 사업주가 신청
※ 경감신청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찾기 ⇒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 게시

라.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 (1) 사업장 경감 : 보험료 등 경감특례적용신청서 및 임금조정내역서 제출
※ 재무제표상 경영성과 배분금 및 기타항목의 계정금액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2) 근로자 개별 경감 :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경감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마. 보험료 부과절차

- (1) 사업장 경감특례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 경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장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과
- (2) 사업장 경감특례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
 - 근로자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1/2) 보험료에 대하여 개인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과
 - 사업주부담분 보험료의 경우 사업장단위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과
- (3) 사업장 경감특례적용 비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
 - 근로자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1/2) 보험료에 대하여는 개인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부과되며, 사업주부담분의 경우 경감특례 해당사항 없음
- (4) 사업장 경감특례적용 비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경감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
 - 경감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및 근로자 경감특례 모두 해당사항 없음

Q

경감 적용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 사업장 단위 경감률은 연도중 또는 보험료 정산 시 적용신청하고
- 근로자별 경감은 보험료정산 시 적용신청합니다

Q

사업장 단위 경감률을 적용 받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별 경감 적용을 신청한 경우 경감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5년 보험 연도 기준)

A

- 2015년도 월별보험료는 사업장 경감률을 적용하고
- 2015년도 보험료정산 시 실업급여의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장 경감률 적용,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의 2014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25%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 경감액 적용합니다
 - 다만, 2015년도 중 신규입사자,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25% 이하인 근로자는 2015년도 중에는 사업장 경감률을 적용받다가 다음연도 정산 시 근로자별 경감을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분 보험료 부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비율은 2011~13년도 1.15, 2014년도 1.20, 2015년도 1.25

Q

사업장 단위 경감률을 적용 받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별 경감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감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감 적용년도 2015년 기준)

A

- 2015년도 월별보험료 및 보험료 정산 시 실업급여의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사업장 경감률 적용하며, 이때 2015년도 중 신규입사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업장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Q

2015년도 월별보험료 부과 시 사업장은 경감대상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 중 경감대상이 있어 근로자별 경감 적용을 신청한 경우 경감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감 적용년도 2015년 기준)

A

- 2015년도 월별보험료 산정 시 경감률 적용은 없고
- 2015년도 보험료 정산 시 본인의 2014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25%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 경감률 적용합니다
 - 즉, 2015년도 중 신규입사자,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25% 이하인 근로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은 2011~13년도 1.15, 2014년도 1.20, 2015년도 1.25

Q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사업장 경감과 근로자별 경감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별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장 경감과 근로자 개별 경감을 각각 원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경감 또는 근로자별 경감 적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동일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신고와 근로자별 경감신청액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경감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사업장에서 신고한 최종 보수총액과 최종 경감신청을 비교하여 사업장 경감은 경감률로, 근로자 경감은 경감액으로 반영됩니다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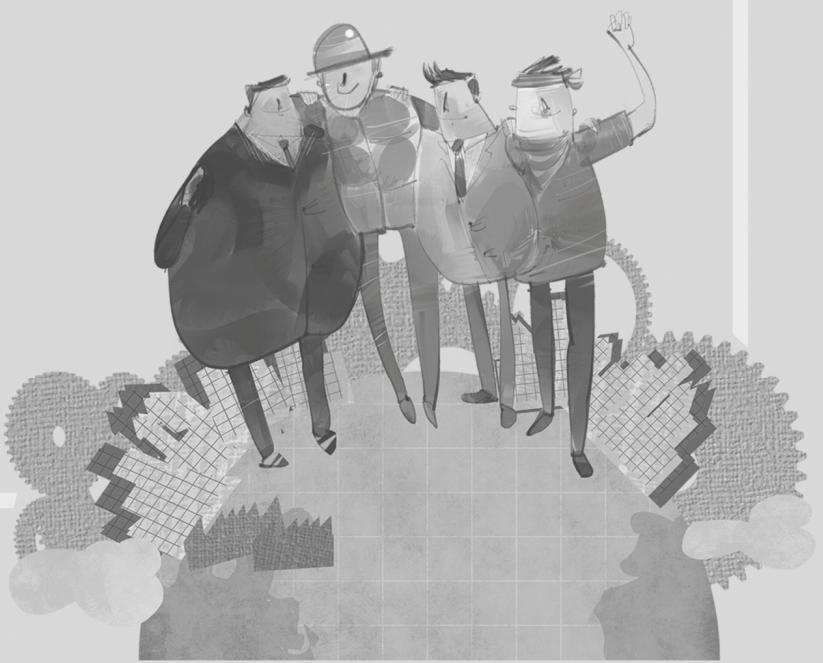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2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함)
 -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나. 적용방법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함
 - 해외파견자의 경우 보험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급여 전액이 현지법인에게 지급된다면 그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③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가. 신청단위

-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다만, 건설업의 경우 국내 적용과 달리 하수급인이 소속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가입 신청도 가능함
-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

나.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다. 가입승인

-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④ 보험관계 성립·변경 및 소멸

가. 보험관계 성립

-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사항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다. 보험관계 해지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5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해외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임
※ 다만,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없어,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15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별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7/1,000

나. 보험료의 신고 · 납부

-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text{월 단위 보험료} = \text{월 단위 보수총액} \times \text{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별목업

$$\text{연간 보험료} = \text{연간 보수총액} \times \text{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및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 실습생”)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봄

2 현장실습생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을 말함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 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참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관련 교습과정 참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3 보험료 산정

-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가입자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봄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함

▣ 제도(법) 시행일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

▣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 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하면서 월 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한 단말기를 말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특례

가. 보험관계 성립

(1) 신고 사유 및 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따라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불필요
- 일반근로자의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 단,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2) 신고 서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1)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이직 신고를 하여야 함

(2) 입직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 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 신청일의 다음 날

(3) 이직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
- 이직,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 신청일

(4) 신고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

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1) 주된 사업장 결정의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함

(2)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먼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 ※ 단,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연도 중에 전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년도에 주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의 사업장별 소득을 비교하여 전체 소득의 1/2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년도 소득비교

- 단순히 연간소득 비교가 아니라, 전년도 가장 나중에 입직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비교
 - ☞ A사업장(1~12월 근무) 총소득 1,200만원, B사업장(7~12월 근무) 총소득 700만원인 경우
주된 사업장은 “A”가 아닌 “B”임

(3) 주된 사업장의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은 해당연도에는 변경될 수 없으나, 보험년도 중에 주된 사업장의 소멸, 이직 등으로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주된 사업장을 결정(변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년도의 주된 사업장 결정을 위하여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종사자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주된 사업장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입직일은 변경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이 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변경 신고

(1)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종사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 가능

(2) 신고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종사자용)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1)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 적용제외 신청은 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처음 적용을 받은 날(입직일)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적용받는 날(입직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 기피, 적용제외 신청 강요, 허위 날인 후 적용제외 신청 등의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로 신고 가능

▣ 유의사항

1.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324조에 따른 협박죄와 강요죄가 성립함
2.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서에 허위 날인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3. 사업주가 위조된 사문서를 임의로 제출할 경우 형법 제234조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2)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
- 재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 연도 1. 1.부터 재적용됨
 - ※ '16. 1. 1.부터 재적용을 원하는 경우 '15. 12. 31.까지 공단에 재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 재적용 신청서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1) 신청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취소 또는 정정 신청 가능
- 입·이직 등 정보의 취소 및 정정의 효과는 사실관계에 맞는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

(2) 신청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취소 신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 신청서

④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나.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다. 보험료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9호)**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 임금(일)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820,160	92,717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1,960,830	64,44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023,08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10,75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943,080	63,88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688,250	56,275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50,000	45,000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가. 개요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 규직을 우대하기로 함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우대

나.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 「산재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해당자로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콕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
 - 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에 미적용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님

다. 혜택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 가능

※ 상세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라. 제출자료

-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공단 지사 조회 가능)

마. 신청 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제4장 중 ·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 · 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 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범위

- 중 · 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됨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건설기계 대여업자)
 - 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 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①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 · 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 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② 퀵서비스업자
 - 5)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제출서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예술인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공동 대표인 경우)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호되지 않음
 - 한편, 건설업 등 각 개별 공사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별로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함
-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보험관계 성립일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 중·소기업 사업주의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특정 업무(분진·진동·연_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 절차

(중·소기업 사업주) 건강진단대상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 (공단 소속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검진 의뢰 ⇒ (진단기관) 검진 시행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및 건강진단 비용 청구 ⇒ (공단 소속기관) 건강진단 비용 지급(공단이 별도 부담)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초일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5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율도 변경됨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는 경우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보험 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2015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9호)**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339,200	44,640
2등급	1,439,580	47,98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402,840	113,428
9등급	4,495,710	149,857
10등급	5,588,580	186,286

▣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나. 보험가입자

- 자활급여 수급자에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보장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 한편, 비영리법인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보험가입자임

- 또한, 광역자활공동체 또는 지역자활공동체 중 자활수급자 스스로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체가 보험가입자가 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12. 8. 2.부터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

다.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 기초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

3 고용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됨
 - 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하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 순위에 따름(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우선)

구 분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타 사업

나.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산정 · 부과 등

○ 보험가입자

-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체 수행)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위탁 수행)이 보험가입자임
- ※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을 사업주로 봄

○ 보험료 산정 · 부과

- 자활급여 수급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자활급여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에 대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 · 고지
- ※ 사업 중 발생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보장자격 변동(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내역을 수시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하여 우리 공단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면 전산 반영하여 월별 부과고지

○ 사업주의 보장자격 변경신고 제도

- 자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장자격 변동 여부 관리 필요
-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변경된 보장자격을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④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⑤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갖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됨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 ③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취득 금지 규정(「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한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가.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나. 보험관계 변경

-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

3 보험관계 소멸

가. 보험관계 소멸 사유

- ① 당연 소멸
 - 폐업
 -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 임금근로자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 · 통지

나.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사례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의 보험관계 소멸일

예시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미납	미납	미납		

☞ 소멸일 : 6월 1일

예시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납부	미납	미납	미납

☞ 소멸일 : 8월 1일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2015년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3호)**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 '12. 1. 22.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15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1,920,0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4호)

나.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2015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단위 : 원)

등급	기준보수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540,000	30,800	3,850	34,650
2등급	1,730,000	34,600	4,320	38,920
3등급	1,920,000	38,400	4,800	43,200
4등급	2,110,000	42,200	5,270	47,470
5등급	2,310,000	46,200	5,770	51,970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다. 보험료 납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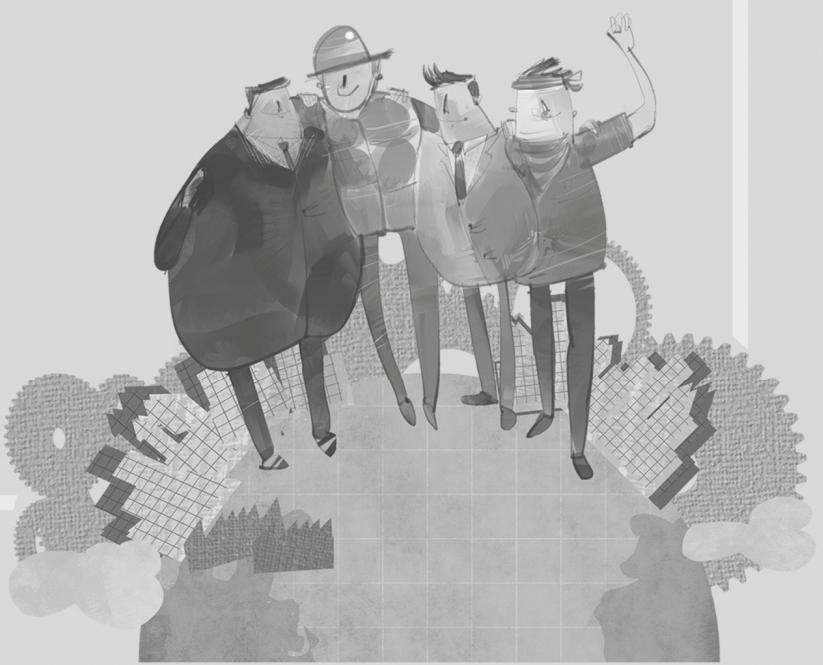
-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제 7 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1 목적

- '12. 7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 사회보험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험가입 유인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제도 수용성이 높은 건강보험과 재해 발생 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

2 부과고지사업장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장 기준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사업장 규모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단
 -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와 임의가입한 근로자는 모두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포함

▣ 가입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가입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 불가
- 사업장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지원 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대상자가 없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에 지원제외 통지하면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2) 근로자 보수 기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14년	2015년
상한액	135만원	140만원

* 보수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 지원 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
|---|
| <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
|---|

- (근로자) 외국인은 사업장 규모 판단 시에는 포함하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

- 외국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와 임의가입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포함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형평성 고려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월평균보수	지원 수준
14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 사업주 0.9%(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65%), 근로자 0.65%(실업급여)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2) 보험료 지원 방법

-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국고지원금”으로 명시

- 해당연도에 신규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15년도 기준 154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 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연도 중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 사업장 자체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미지급금으로 생성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받아 지급
 - 미지급된 지원금은 공단본부에서 월별보험료 산정 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자동 지원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피보험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서식신설, 공통서식) 작성 · 제출
 - (신규사업장) 보험관계설립신고서(개정서식)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
- ※ 우리공단과 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전자신청 : <http://www.4insure.or.kr>)

(2) 지원사업장 해당 · 비해당 결정 통보

-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상세 안내(통지서 서식 반영)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를 사업장에 일괄DM발송(소속기관에서 출력 가능)
 - 지원통보를 받은 사업장이더라도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기준 등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 통보

(3) 보험료지원금 산정 · 통보

- 월별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공단본부에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 ※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에 대해 최초 지원금 지급시 1회에 한하여 안내하고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내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근로자가 회원가입 후 정보조회>보험료 정보>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에 대한 처리

- 보험료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는 지원금 산정 시 보류하였다가 이중취득이 해소 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 '12. 2월부터 한고원에서 이중 취득자 정보 제공하여 공유 중

3. 자진신고사업장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장 기준

- 건설업 · 벌목업 본사(이하 “건설본사”라 함),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지원기준 마련
 - (건설본사) 부과고지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과 동일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확인신청일을 지원신청일로 보고 부과고지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적용
 - ※ 다만,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지원제외 기준은 미적용
 - 해당 보험 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지원 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사업개시신고) 또는 가입신청 당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건설공사는 원수급자의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

- (별목현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사업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별목 재적량이 2,700m³ 미만인 사업장
 -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은 근로형태, 근무 일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 ※ '12. 7. 1.이후 건설공사 또는 별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

(2) 근로자 보수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상한액	135만원	140만원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 자진신고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 보험료지원금 지급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 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부 시 도급금액(또는 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건설본사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사업장에서 확정보험료 신고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미지원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 부과고지 사업장 지원 기준과 동일

근로자 월평균보수	지원 수준
14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 사업주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65%), 근로자 0.65%(실업급여)

(2) 보험료 지원 방법

- 보험료 납부체계(자진신고 · 납부, 연납)를 고려하여 신청절차 이원화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고 나서 고용보험료를 신고 · 납부한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계좌로 지원금 입금
 - (건설본사) 법정기한 내 확인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완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연 1회)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 건설공사 또는 별목작업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산보험료를 신고 · 납부(완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일괄사업장의 사업개시신고 공사는 공사종료일까지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완납으로 간주, 분기납 사업장의 완납 여부는 공사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다. 지원절차

(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접수기간

- 사업주가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건설본사)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보험료 지원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 공사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 방법

- (건설본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작성 · 제출
 - 성립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확인신청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성립신고서 서식에는 지원신청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건설업 본사의 경우 지원신청을 확인신청으로 보아 업무처리)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작성 · 제출
 - 성립신고(개시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별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에 확인신청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

(2) 지원 대상 사업장 결정 · 통보

- 소속기관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 · 결정
 -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확인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에 결정통지서를 일괄 DM 발송
 - 지원 대상 사업장에는 보험료지원 사업장임을 알리는 내용의 게시문을 동봉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토록 안내

(3)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기간
 - (건설본사) 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날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 사업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 된 지원 대상 근로자만 기재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기재하지 않음
- 자진신고사업장은 월평균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위해 근로자 인적 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 일수) * 30일

(4) 지원금 지급 · 통보

- 보험료 납부 확인
 - (건설본사)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완납)
 - (건설공사 및 별목업) 공사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 신고 · 납부(완납)
 - 사업개시신고 공사의 경우 공사종료일까지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완납으로 간주

- 분할 납부 사업장은 공사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로 완납 판단
-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종료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완납)한 경우에는 완납으로 인정

○ 보험료 지원금 산정 · 지급

-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산정 시 지원사업장 확인을 받은 이후의 피보험자격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신청 당시 지원 대상 사업장 인지 여부를 재확인
- 확인신청 당시 지원사업장 기준을 미충족한 사업장은 지원사업장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해당 결정 통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신고기간 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사업장 계좌로 지급

○ 처리결과 통보

-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지원금지급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 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 3천원미만 환수금 면제(2014. 9. 25. 시행)

○ 환수금 산정 방법

- 전액환수 :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전액
- 일부환수 : 기 지원된 지원금 - 실 지원될 지원금

2 환수절차

-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환수결정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환수금 체납 시 사업주(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신용카드매출채권, 거래대금, 공사대금,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격신고 기한 준수
 - 지원금의 환수결정 및 통지는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이루어지며, 환수결정 통지 시 최초 납입고지 병행 처리

3 환수금 납부방식 및 방법

○ 환수금 납부방식

-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로(OCR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환수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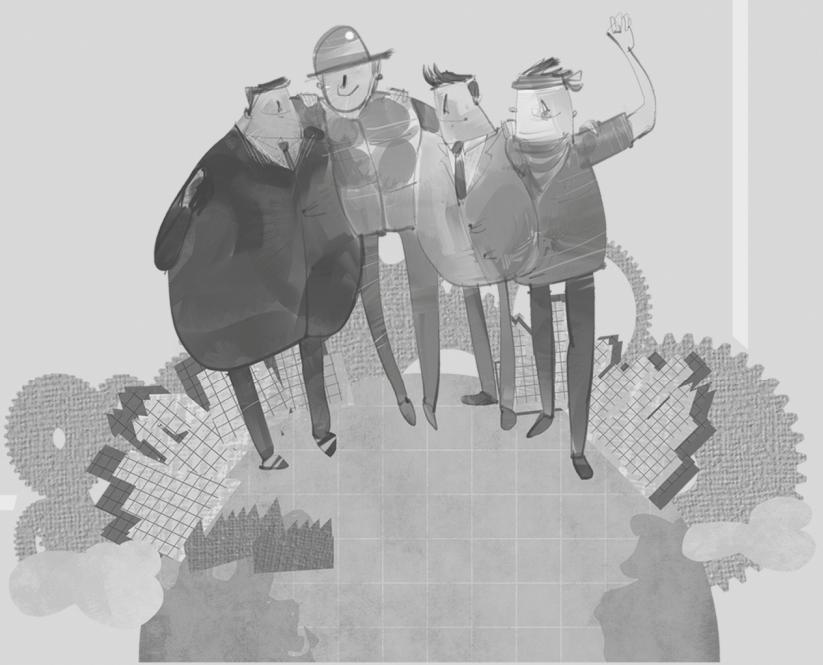
□ 지로(OCR고지서)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납부

인터넷 지로 (뱅킹)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은행 :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일반지로납부 선택)」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지로 납부 선택)」로 접속 후 지로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입력·납부 - 인터넷지로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22:00 (단, 일부 은행의 경우 365일 07:00~22:00이므로 지로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방법·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공과금 수납기 이용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수납기에 고용보험료 환수금 고지서를 절취하여 사용 - 이용가능은행 :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16: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CD/ATM기 이용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ATM기에서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납부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7:00~22: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토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지로홈페이지로 연계 납부
가상계좌 이용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능(이용시간) 은행영업일 09:00~18:00

제8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과태료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 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
 - 단, 가산금의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
-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를 경감

3 연체금

-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
 - 최초 30/1000, 매달 10/1000 추가 부과되어 총장 7개월, 최고 90/1000까지 부과
- 연체금의 징수면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의의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나. 징수요건

-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계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100 해당액
 -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산재보험료 납부를 계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재해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100 해당액
- 단,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최초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봄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참 고

참 고

- <참고1> 2015년도 고시사항 정리
-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참고4>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 <참고5>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 <참고6>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 <참고7>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참고8>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참고 1

【2015년도 고시사항 정리】

【2015년도 적용 및 부과업무 관련 고시】

구분	2014년		2015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58개		58개			
산재보험료율	평균요율 - 최고 - 최저	17.0/1,000 340/1,000(석탄광업) 6/1,000(금융 및 보험업)		17.0/1,000 340/1,000(석탄광업) 7/1,000(금융 및 보험업 등 5개)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3/1,000		13/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150명 미만 150명 이상(우선) 150명 이상 1천명 이상	2.5/1,000 4.5/1,000 6.5/1,000 8.5/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150명 미만 150명 이상(우선) 150명 이상 1천명 이상	2.5/1,000 4.5/1,000 6.5/1,000 8.5/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8/1,000		0.8/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4/1,000		0.04/1,000		
	일반건설 노무비율 하도급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공사금액의 31%		
벌목업 노무비율	1m ³ 당 10,932원		1m ³ 당 10,610원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2,953,800원		3,157,765원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일)	1등급	1,250,400(41,680)원		1,339,200(44,640)원		
	2등급	1,395,180(46,506)원		1,439,580(47,986)원		
	3등급	1,540,000(51,333)원		1,540,000(51,333)원		
	4등급	1,730,000(57,666)원		1,730,000(57,666)원		
	5등급	1,920,000(64,000)원		1,920,000(64,000)원		
	6등급	2,110,000(70,333)원		2,110,000(70,333)원		
	7등급	2,310,000(77,000)원		2,310,000(77,000)원		
	8등급	3,349,170(111,639)원		3,402,840(113,428)원		
	9등급	4,388,370(146,279)원		4,495,710(149,857)원		
	10등급	5,427,570(180,919)원		5,588,580(186,286)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	1,540,000원		1,540,000원		
	2등급	1,730,000원		1,730,000원		
	3등급	1,920,000원(기준)		1,920,000원(기준)		
	4등급	2,110,000원		2,110,000원		
	5등급	2,310,000원		2,310,000원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업 종류	보험료율				사업 종류	보험료율			
	'12	'13	'14	'15		'12	'13	'14	'15
(평균요율)	17.7	17.0	17.0	17.0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광업					3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9	9	10
100 석탄광업	354	340	340	340	4. 건설업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129	104	84	400 건설업	37	37	38	38
102 채석업	246	238	285	338	5. 운수·창고·통신업				
103 석회석광업	76	77	87	83	500 철도·궤도 및 삽도운수업	9	8	8	8
105 기타 광업	72	67	71	69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20	19	19	19
2. 제조업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24	23	25
200 식료품제조업	22	20	20	19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73	71	71	69
201 담배제조업	9	8	8	8	504 수상운수업, 항만항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0	31	30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감)	14	13	13	13	506 항공운수업	7	7	7	8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23	22	21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9	9
203 제자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	-	-	509 창고업	16	15	15	14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1	47	49	46	510 통신업	12	11	12	12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25	25	24	6. 임업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10	12	12	600 임업	72	80	87	89
207 인쇄업	16	-	-	-	7. 어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18	17	17	17	700 어업	314	252	202	162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9	9	9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18	21	25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	-	-	8. 농업				
237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85	-	-	-	800 농업	29	27	27	27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제조업	-	17	14	13	9. 기타의 산업				
212 고무제품 제조업	24	22	23	22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18	18	17
214 우리 제조업	20	17	16	15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31	32	32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31	31	30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	-	-
216 시멘트 제조업	26	27	28	29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0	10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42	41	39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6	6	7	7
219 금속제련업	12	11	11	10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7	7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34	33	33	909 교육서비스업	8	7	7	7
222 도금업	23	21	20	19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10	10	9
223 기계기구제조업	24	22	21	20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9	9	9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2	12	11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11	11
225 전자제품 제조업	7	7	7	7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10	9	9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27	26	26	0. 금융 및 보험업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18	17	16	000 금융 및 보험업	7	6	6	7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18	18	17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17	17	17	17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1	10	9	9	주한미군	7	7	7	7
229 수제품 제조업	17	16	16	16	임금채권부담금	0.8	0.8	0.8	0.8
230 기타제조업	33	31	30	2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5	0.04	0.04	0.04

[2015년도 기준보수 고시]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서울	1,823,463	1,856,576	2,022,508	1,438,585	1,654,184	2,006,689	1,802,126	1,701,924	1,553,391	1,597,798	1,798,867
부산	1,886,771	1,629,086	1,977,177	1,268,755	1,552,000	1,801,764	1,469,246	1,606,227	1,397,523	1,647,906	1,561,343
대구	1,589,104	1,521,974	1,326,433	1,175,182	1,604,735	1,516,840	1,400,306	1,353,252	1,297,160	1,614,638	1,351,069
인천	1,948,647	1,596,547	1,790,913	1,262,535	1,713,245	1,906,626	1,591,974	1,166,220	1,382,887	2,042,225	1,476,320
광주	1,798,617	1,521,913	1,857,257	1,345,049	1,476,882	1,499,678	1,855,431	1,395,101	1,376,002	1,450,383	1,525,648
대전	1,800,607	1,546,475	1,695,765	1,312,107	1,387,994	1,744,996	1,612,847	1,322,111	1,448,901	1,166,220	1,656,923
울산	2,147,561	1,690,278	1,933,984	1,337,719	1,941,625	1,867,819	1,712,971	1,433,150	1,384,975	1,238,555	1,502,314
경기	1,991,623	1,733,081	1,595,783	1,441,273	1,695,610	1,837,703	1,652,779	1,574,073	1,336,038	1,803,901	1,632,628
강원	1,760,893	1,396,737	1,514,924	1,218,198	1,492,232	1,607,929	1,615,266	1,398,810	1,390,797	1,709,971	1,488,369
충북	2,229,409	1,504,638	1,506,101	1,414,220	1,623,406	1,681,730	1,466,044	1,561,100	1,391,315	1,612,156	1,425,930
충남	2,153,898	1,574,378	1,663,492	1,266,814	1,727,608	1,880,171	1,580,166	1,606,068	1,347,899	1,532,608	1,480,455
전북	1,858,356	1,437,597	1,690,205	1,401,762	1,419,286	1,525,618	1,510,471	1,484,032	1,436,060	1,273,162	1,474,951
전남	1,910,916	1,443,346	1,563,021	1,243,393	1,619,812	1,611,454	1,281,986	1,666,351	1,426,293	1,306,480	1,466,229
경북	1,933,778	1,515,023	1,508,080	1,344,765	1,532,645	1,692,098	1,579,378	1,350,449	1,360,090	1,724,766	1,433,051
경남	2,107,139	1,617,853	1,641,781	1,256,380	1,530,761	1,781,317	1,939,669	1,352,472	1,391,469	1,276,323	1,586,389
제주	1,693,035	1,399,473	1,850,217	1,513,739	1,202,310	1,803,992	1,184,341	1,595,629	1,391,663	1,345,050	1,470,323
세종	1,741,223	1,519,660	1,542,374	1,245,844	1,509,546	1,436,243	1,631,118	1,166,220	1,263,188	1,405,987	1,434,583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산업 분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1,785,220
B. 광업	2,119,176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24,408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92,322
F. 건설업	3,157,76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08,579
K. 금융 및 보험업	2,112,25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843,623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166,220
U. 국제 및 외국기관	3,196,331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주44시간제 사업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

참고 2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리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리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급여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증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경제적 이익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의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균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 (조특법88의 4)	

참고 3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 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228, 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 출장·연수 및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국외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소득세법 기본통칙-16…1 ; 법인46013-3631, 1996.12.27.)

참고 4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전후유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워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산재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	×	×
-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신문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	×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산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150만원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월 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참고 5 <▶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 자격관리 비교표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사업장)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건설업종 면허를 가진 경우 공사금액에 상관 없이 적용) ③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종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건설업종 면허를 가진 경우 공사금액에 상관 없이 적용) ③ 농업·임업(별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종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적용 제외	일용직	1개월 미만	1월 미만	해당 없음
	기한부	1개월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절적 일시적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근로자(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해당 없음
관리단위	개인	개인(세대주)	사업(장) (실업급여는 개인단위가입)	사업(장)
당연적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제한 없음	65세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65세 이상자도 해당)	제한 없음
돌이상 사업장	각 사업장에서 적용	각 사업장에서 적용	주된 사업장에서 관리	각 사업장에서 적용
사용자 적용 여부	근로자와 동일한가입자로 관리	직장가입자로 관리	50인 미만 또는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50인 미만 사업주, 화물지입차주 등 임의가입 가능

▶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소득 재결정 (계속 적용시)	연 1회 정기 결정 (전년도 소득 기준)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정기 결정(건설 및 벌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납부(다만, 건설공사 등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p>* 분할납부 하는 사업주는 1기분은 3.31, 그 이후의 각 기분은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보험료 : 전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다음 보험 연도의 3.31까지(보험 연도중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 월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 다음연도 6월	좌 동	해당연도 1월~12월	
부과소득 상한선	408만원 (2014.7~2015.6까지 적용)	상한선 있음 7,810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율	9%	6.07%(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 1.3%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 0.25~ 0.85%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보험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정기고지 주기	월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건설업 : 월 ○ 건설업 및 벌목업 : 년 또는 분기 	
보험료 결정방법	공단 부과	공단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건설업 : 공단 부과 ○ 건설업 및 벌목업 : 사업주 신고 	
납부방법	월납	월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건설업 : 월납 ○ 건설업 및 벌목업 :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 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건설업 :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 건설업 및 벌목업 : 해당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납부 의무자 (사업장)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참고 6 《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

PART
I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요령 세부 안내

| 사업장 현황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l.or.kr) 또는 전자마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임시아이디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작성자명 (전화 :)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장현황은 공단에 가입된 사업장 정보가 미리 적혀 있습니다.

- 작성자명 및 전화 : 공단에서 업무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임시아이디 : 토탈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15. 3. 31까지는 "임시아이디"를 사용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 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 총액(원)

※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항목만 적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미리 적혀 있습니다.

공단에서 미리 제공하는 정보

- ① (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표시

※ 보험료부과구분부호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변경한 후에 새로운 보수총액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9	O	O	O	O	65세 이후 입사자 중 고용승계된 자	

- (취득일) 근로자 고용일(입사일),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

- (상실일) 근로자 고용종료일(퇴사일의 다음날),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항목

- ②, ③(연간보수총액) 2014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Tip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다만, 조세특례 법상의 비과세(⑯-11, ⑯-14, ⑯-15, ⑯-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단, 휴직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단순히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일반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 산재보험	⑤ 고용보험

· ④(산재보험),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보수총액) 2014년도에 사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서식 중 ①~③의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⑥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⑦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

Tip 일용근로자란?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이고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대상이며,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해당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별도 서식 발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④ 산재보험	⑤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⑤ 일용근로자 전체	⑤-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뒷면 작성방법 참조)

· ④(산재보험),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⑤-1(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근로일부터 근로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안내

- 실업급여 보험료 :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에서 ⑤-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뺀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⑤(고용보험_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우리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관할지사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⑥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 ⑥(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 보수총액(①~③), 일용근로자보수총액(④~⑤), ⑥-1과 구분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좌오로 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

⑦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 ⑦(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별 보수총액(①~③), 일용근로자보수총액(④~⑤), ⑥-1과 구분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좌오로 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별보험료 부과 방법

- 2014년도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2014년도 보험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2015년도 월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
 ※ 해당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별도 서식 발송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 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 ⑬(“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활근로종사자 : 연도 중에 보장 자격이 변동(급여특례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되는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자활근로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 :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 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을 적고, 실업급여는 노조전임기간과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조전임자가 있었으나 보험료부과구분부호 미신고 또는 착오신고로 별도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변경한 후에 우리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관할지사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⑨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⑨(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②합계액+④+⑥+⑦)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도 중 업종 변경 사업장은 변경 전후 일자가 미리 적혀 있습니다. 해당사업장만 적습니다.

| 기타 신고 항목 |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④,⑤) 및 그 밖의 근로자(⑥,⑦)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 2014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④~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서식 ①~③ 제외한 근로자).

● 2014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⑩ □ ()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 ⑩(2014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2014년도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등 근로자 사용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미제출시 불필요한 제출 안내를 받게 되고, 보험료가 직권부과 될 수 있으니 근로자 사용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사용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 또는 반환 선택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1곳에만 표시)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⑪(정산 후 과납보험료 충당 또는 반환선택) 2014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2015년 발생하게 될 월별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는 선납충당에, 바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환에 표시하고, 반환신청 시에는 반환계좌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반환계좌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2014년도 보험료 정산결과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는 토탈서비스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안내책자 p.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⑫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 ⑫(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은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 금액이 크더라도 한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산보험료가 분할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표시가 없는 사업장은 정산보험료 추가부과금액이 4월 월별보험료보다 금액이 큰 경우 2분할 하여 4월과 5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PART
II

보수총액신고서 토탈서비스 신고 요령

| 토탈서비스 사업장 규모별 분산 운영 안내 |

구분	사무대행기관	사업장별 근로자 수		
		30명 이하	31~300명	301명 이상
파일다운로드	2.26~27	3.2~3	3.4~5	3.6
신고일	3.5~9	3.10 이전	3.12 이전	3.13 이전

※ 토탈서비스 이용이 일시에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를 최대 방지하고자 위와 같이 파일다운로드 및 신고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산하여 운영 중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total.kcomwel.or.kr>)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 3. 31.까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보수총액신고서에 표시된 임시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수총액신고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입력 |

- ① 빠른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 ②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설정 또는 입력합니다.



- ③ 보수총액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 화면입력방식(화면에서 바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방식)
- 엑셀파일 불러오기(엑셀파일로 별도 작성한 근로자별 보수총액신고서를 업로드하는 방식)
※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화면입력방식을 선택한 경우

(1) 보험연도 및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2014	년도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사업장명稱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관리번호별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

보험년도*	2014	년도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사업장명稱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input type="button" value="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 ‘보수총액신고대상자 자료조회’ 클릭 시 ‘일반근로자 보수총액’ 화면에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의 고용정보(주민번호, 성명, 취득일, 상실일)이 보여집니다.

(3) 일반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산재)취득일	(산재)상실일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취득일	(고용)상실일
입력정보 엑셀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엑셀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엑셀제작"/>							

- 근로자별 고용정보 확인 후 2014년도 발생한 보수를 입력합니다.
 - 신고대상자에 조회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자고용(취득)신고를 먼저 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2014. 1. 1.전에 이미 퇴사하였으나 고용종료(상실)신고가 안된 근로자가 신고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근로자고용종료(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행삭제” 금지
- ※ 2014년도 중에 고용종료(퇴사)한 근로자는 2014년도 보수총액 신고대상입니다.
- 입력한 신고정보는 “입력정보 엑셀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4)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입력(해당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작성)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input type="button" value="부과부호 구분 설명"/>							
입력정보(0건)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산재)취득일	(산재)상실일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취득일	(고용)상실일
입력정보 엑셀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엑셀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엑셀제작"/>							

- 근로자별 고용정보 확인 후 2014년도 발생한 보수를 입력합니다.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을 선택한 경우

(1) 보험연도 및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2014	년도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관리번호별로 보수증액신고 합니다.

(2) 보수총액신고 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보수 출액선 고작성방식 선택 :		<input type="radio"/> 하면입력방식	<input type="radio"/> 액설파일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자주묻는 질문	<input type="checkbox"/> 신고절차 궁금하기
보증년도*	2014	년도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사업장명칭	<input type="text"/>		대표자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input data-bbox="531 734 689 736" type="button" value="일반고객사 신고대상자 다른로드"/> <input data-bbox="698 734 855 736" type="button" value="자영업자 신고대상자 및 노조관련자 신고대상자 다른로드"/> <input data-bbox="864 734 905 736" type="button" value="소개해"/>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신고대상자(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신고대상자 정보가 기록되어진 엑셀파일을 다운받습니다.

(3) 엑셀파일 작성

- 엑셀파일에 기록된 근로자별 2014년도 연가보수총액을 입력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엑셀파일 양식은 위의로 변경(버전변경도 불가)해서는 안되고, 환수나 매크로를 포함해서도 안됩니다.

(4) 엑셀파일 업로드

- 작성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도 동일).
 - 엑셀파일에서 작성했던 신고정보와 환면에서 보여지는 신고정보의 겟수를 확인합니다

화면입력방식이나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 모두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

※ 해당사업장만 입력합니다(항목별 입력방법은 p4~7까지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근로자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월용근로자만 입력하세요.	입체비해당 입체변경사유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임금체결부당금 연간보수총액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	86세이후 세로 고율원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일용근로자들의 2014년도 보수총액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별도 입력합니다(해당 사업장만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미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2014년도 보수총액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3)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입력

●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 고용보험에 기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미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2014년도 보수총액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4)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입력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상단의 일반근로자 계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고 0명인 경우 0을 기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복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입력

(5)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입력

● 연도별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산정기간	산정보수총액
2014-01-01 ~ 2014-06-30	₩ 0,000,000
2014-07-01 ~ 2014-12-31	₩ 20,000,000

- 2014년도 중에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연간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입력

(6)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선택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미희망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9 제4항에 따라 월보험료를 초과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2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고지 미희망

- 정산결과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액을 분할없이 한번에 고지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

(7)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선택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임금체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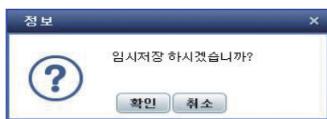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부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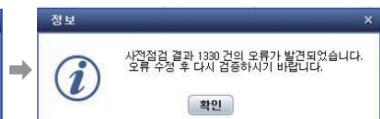
- 동의 선택 시 2015년 내야하는 보험료에 충당
- 부동의 선택 시 반환계좌 등록 필요

| 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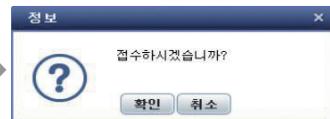
(1) 임시저장



(2) 신고자료 검증



(3) 접수



- 서식관련 검증 → 데이터 검증 2단계로 수행됨

- 1단계 : 필수입력정보, 취득일과 상실일의 선/후 관계, 연간보수총액 입력 여부 등 체크
- 2단계 : 근로자 구축정보와 입력정보를 비교, 신고누락 근로자, 산재/고용 미신고 근로자, 중복입력 등 체크
- 검증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수정 후 재검증

|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및 처리 현황 조회 |

(1) 마이페이지



(2) 민원접수현황조회



PART
III

전자기록매체(CD) 신고 요령

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① 홈페이지 자료마당-서식자료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전자파일 서식 1, 2 내려받기 ② 내려받은 파일에 신고대상자의 연간보수총액 작성 후 CD에 저장 ③ 보수총액 등의 전자기록매체 신고서 작성 후 CD와 함께 신고
신고방법	공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자료	① 보수총액 등의 전자기록매체 신고서, ② CD(라벨 부착 필요)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근로자 신고 파일명은 “1.”을 반드시 맨 앞에 표기.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신고 파일명은 “2.”를 반드시 표기. 서식변경 불가(오류발생) - 숫자 부분은 반드시 정수로 기재(소수점 이하 입력, 기호, 콤마, 함수사용불가)

PART
IV

보수총액신고서 작성관련(Q&A)

• 1. 보수 관련 문의

Q. 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 연간보수총액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보수란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금액을 연간보수총액에 적으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⑯-11, ⑯-14, ⑯-15, ⑯-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2. 보수총액 신고 대상

Q.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보수총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대표자(법인 및 개인 모두 포함)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의 배우자는 공단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보수총액신고를 합니다.

Q.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2014년도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

A. 네. 건강보험과 적용단위 및 적용대상 등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로자 사용 및 보수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금년도 월별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Q. 2014년도 근로자 사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네. 보수총액신고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⑩ 2014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표시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4년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므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 신고방법

Q. 2015년부터 적용되는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다는데 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A. 근로자 고용일에 따라 월평균보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고용일	산정방법	적용기간	신고방법
전년도 9. 30.이전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		
전년도 9. 30.이전 & 고용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times (전년도 근무일수 - 고용월근무일수)\} ÷ 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2015년 4월~2016년 3월	사업주 별도 신고 없음 (보수총액신고서상 보수 및 고용정보로 공단에서 산정)
전년도 10. 1. 이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이내인 경우 그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12개월(1년이내인 경우 해당근무개월 수)	고용일이 속한 달~ 2016년 3월	근로자고용(취득)신고 시 사업주가 신고

• 4.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Q.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대상 중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설명	예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 업무를 한 근로자

PART
V

주요정보 안내

| 보험료 미리 알아보기 안내 |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보험료 알아보기(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가입 · 납부서비스 → 보험료 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고용보험료 알아보기



| 보험료 경감안내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을 신고하시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임시아이디 사용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 다만 월별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월별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
 - ※ 자동이체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2015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50% 지원

구분	'14년	'15년
지원기준(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140만원 미만
지원율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각 1/2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각 1/2

| 보험료 경감 특례 적용안내 |

-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성과급 등 과세소득 비중이 큰 일부기업의 급격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도 보수총액이 2014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신청에 의해 보험료 경감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제도 적용확대 안내 |

■ 2016년부터 적용 규모 확대

- 건설업·별목업 외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10명 이상
- 건설업 : 2년 전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 20억 이상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사업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 소규모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위탁 안내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토탈서비스 一石二鳥(일석이조) 경품 행사 안내

- 행사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2015년 3월 31일(화)
- 행사대상 : ① 2015년 3월 16일(월)까지 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한 사업장(단,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② 2015년 3월 31일(화)까지 토탈서비스에서 보험료신고를 한 사업장(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무관)
- ※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없이 임시아이디로 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신고,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행사대상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 : 2015년 4월 10일(금) ※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에 당첨자 명단 게시 및 SMS 개별안내

참고 7

【 2015년도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참
고

고용 ·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 안내

- 건설업 등의 보험료 **자진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2014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4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5년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5년 3월 31일(화)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납 1기 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 건설업 사업장, 벌목업 사업장
- 2012. 1. 21. 이전 가입한 고용보험 자영업자

- 본 책자의 안내에 따라 보내드린 보험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신고서 하단 및 본 책자 29~30페이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참조)에 **2015년 3월 31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방 문 접 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팩 스 접 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5. 3. 1.~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 여부 자동회신)
- 인터넷접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 가능)
단, 개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우 편 접 수** 2015년 3월 31일(화)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출된 보험료는 같이 **보내 드린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2015년 3월 31일(화)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 31일(화)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추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 되오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1. 2014년도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 공단에서는 매년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추정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 보험료에 대해 조사(확정정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확정정산 현황

연도	확정정산 사업장수(개소)	보험료 추징현황	
		사업장수(개소)	추징액(억 원)
2012	2,276	1,777	845
2013	2,431	1,865	923
2014	2,509	2,120	750

2. 2015년도 개산보험료 적정신고 안내

-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이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0이상~130/1000이하인 경우는 '15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1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10,000,000원이고 '15년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이 8,000,000원일 경우
'15년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 신고

- '15년 개산보험료 신고시 '15년 법정 신고납부기한전 착공한(착공할) 원도급공사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 등이 있으면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반드시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2

'15년 법정 신고납부기한전 2건 (① 공사기간: '14. 1. 1.~'15. 12. 31. 총공사금액 2억 원, '14년 기성공사금액 1억 원
② 공사기간: '15. 2. 1.~'15. 8. 30. 총공사금액 1억 원)의 공사내역이 있으면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을 54,000,000원
(2억 원 ('15년 추정 총공사금액) × 27%(노무비율))으로 추정하여 그 외 '15년도 발생될 보수 추정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보험료 적정부과 조사 사업장 현황

구 분	사업장수(개소)	추징액(억 원)
합 계	6,128	77
3년 연속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사업장	504	41
'13년 확정보험료 "0"원 신고 사업장	3,376	21
'14년 개산보험료 "0"원 신고 사업장	2,248	15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원수급인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공동도급공사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2%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 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공동도급공사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각 출자비율만큼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각 사간 협약을 통해 본사 파견 직원에 대해 각 사의 본사 고용보험으로 납부하기로 한 채, 각 사별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재료비 계정 등의 외주공사비·노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 등의 외주공사비와 노무비를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직영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2%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보험료신고서를 본 책자에서 설명하는 작성 요령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마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은 보험료 산정시 유의할 점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1. 20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2%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2%

| 유의사항 |

-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기공사 ② 원도급공사
 -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 가입정보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를 참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2015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 '15년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이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 130/100 이하인 경우는 '15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을 '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4페이지 산정 예시) 참조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공단담당자 :		접수일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 면)
접수번호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소재지 :	처리기간 5일
① 사업장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 휴대전화 : FAX : E-mail :				
(2014)년 확정보험료	구 분	신청기간	③보수총액 (일년)요율	개산보험료액 (②×③)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4-01-01~ 2014-12-31	/1,000	④신고액 (③×⑤)
	실업급여	2014-01-01~ 2014-12-31	/1,000	⑤납부액 (⑥×⑦)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4-01-01~ 2014-12-31	/1,000	⑥총당액 (④+⑤)
	계			⑦반원액 (⑥×⑧)
▼ 아래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 합니다.				
(2015)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신청기간	③보수총액 (일년)요율	⑥개산보험료액 (⑧×⑨)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000	⑪분할납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000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000	
	계			
※ 월평균급여 등에 기여한 실업급여는 별도로 부담금 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월급제 청구금액을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IBS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I. 공통사항

① 신고사업장 현황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공단담당자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②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 사업구분

사업구분은 일반사업장(건설업본사), 건설업, 벌목업, 해외사업장(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12. 1. 21. 이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함) 중 해당 사업입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구분코드(1자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중복된 사업장 : 준등록번호(10자리) + 구분코드(1자리)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기재

- 휴대전화, 이메일 등은 신고기한, 납부기한 등 주요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건설업 등」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

④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④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별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 월별보수총액은 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한 보수 포함)을 기재합니다.
- ▶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2014. 1월 ~ 12월 [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보수]
 - ↳ 외주공사비 × 32%(하도급노무비율)
 - ※ 단, 외주공사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 [월보수총액 ÷ '14년 건설업 월평균보수(2,953,800원)]
- ▶ 2014. 1. 1. 부터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1페이지 참조)

●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총액=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예시

산재보험 보수총액=순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순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합니다. 산정한 보수총액을 ④항목 산재, 고용보험 「합계」금액에 기재하며, 이 금액이 9페이지 ④항목 2014년 확정 보험료 ①보수총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보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23~24페이지 참조)

● 건설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하도급 노무비율('14년 32%) 사용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 노무비율 32%)] × 보험료율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포함하며,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 사업주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가입은 21페이지 참조).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산정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④ 2014년 확정보험료 (예시)

④ (2014)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일반)요율	③확정보험료액 (① × 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⑤납부액
고용 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4-01-01~ 2014-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1,084,000	1,000,000
	실업급여	2014-01-01~ 2014-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1,100,000	900,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4-01-01~ 2014-12-31	122,212,275	2.5/1,000	305,530	250,000	200,000
	계	-	-	-	1,894,280	1,350,000	1,100,000

① 보수총액

- 8페이지 ④ 항목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② 보험료율

- 2014년도 산재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 「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4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등

2014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산 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③ 확정보험료액 = ① 보수총액 × ②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위 ④항목의 ②번 보험료율에서 '14.1.1.~'14.12.31까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1,000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이 2.5/1,000이므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times 13 \div 1,000 = 1,588,759$ 원(원단위 이하 절사) ➔ 1,588,75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times 2.5 \div 1,000 = 305,530.68$ 원(원단위 이하 절사) ➔ 305,530원

$$\text{※ 고용보험료(계)} = 1,588,750 + 305,530 = 1,894,280\text{원}$$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④ 2015년 개산보험료 (예시)

④ (2015)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 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일시납부 []분할납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기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근로자 감소 []휴업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⑧ 보수총액

- 2015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입니다.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2014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일 경우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 130% 사이)

■ 만 65세 이상 근로자 : 법 개정으로 2014. 1. 1부터 고용보험료 징수

구 분	만 65세 전 고용된 자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미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	징수

- 2013년까지는 만64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만64세 이상 근로자도 이직할때까지 고용보험료 징수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 ① 고용일 : 2012. 9. 7. 생년월일 : 1947. 9. 22.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징수대상
- ② 고용일 : 2014. 1. 10. 생년월일 : 1949. 1. 15.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징수대상
- ③ 고용일 : 2014. 1. 20. 생년월일 : 1949. 1. 15.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징수 대상

⑨ 보험료율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임금채권부담금비율} +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15년도 산재보험 일반요율 : 건설업 38/1,000, 건설업본사 10/1,000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별」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5년도 개별실적요율대상은 성립일이 2011. 6. 30. 이전이고, 건설업본사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은 2013년도 총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사업장에도 일반요율로 안내된 경우는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요율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0.8/1,000

■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비율 경감기준

-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퇴직보험(일시금신탁), 외국인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감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부담금경감신청서(퇴직보험 등 가입확인서, 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0.04/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도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하였고, 이에 2011. 1. 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015년도 고용보험료율

구 分		2015년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전 사업 동일	6.5/1,000	6.5/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없음	2.5/1,000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없음	4.5/1,0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1,000인 이상 기업	없음	6.5/1,000
	국가·지방자치단체	없음	8.5/1,000

※ 기재된 요율이 사업장의 실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요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당한 요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도 사업주 신고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추후 확인되면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2015)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22,212,275	2.5/1,000	305,530	[]일시납부 []분할납부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기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근로자 감소 []휴업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⑪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시면 3%공제 혜택(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이 있습니다.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⑪분할납부 여부 항목 [✓]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❶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비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⑪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 – 3. 31, 제2기 – 5. 15, 제3기 – 8. 15, 제4기 – 11. 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⑥)은 분할납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6		사업장명	(주) 0 0 건 설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고용 보험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324,780원	331,210원	331,190원	331,190원	331,190원
	실업급여	1,588,750원	397,210원	397,180원	397,180원	397,18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76,380원
	계	1,894,280원	473,600원	473,560원	473,560원	473,560원

2015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0 0 건 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2015년도 개산보험료액(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을 4등분하여 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체 금액에서 2기~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588,750원 \div 4 = 397,187.5원$ 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397,18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하고 개산보험료총액 1,588,750원에서 제2기~제4기의 합산금액인 1,191,540원을 뺀 397,210원을 제1기에 기재

※ 「개산보험료」는 앞면 ⑩번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 유의 사항

- 개산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2기(5월 15일 납기)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 납부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진납부 제도의 특성상 자동계좌이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기존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도 2015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또는 제1기(납부기한 3월 31일) 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내역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뒷면 **▣** 항목으로 이동하여 건설 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12. 1. 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로 신고가 없으므로 ❶, ❷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5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❸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15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총액 : 23,040,000원 (월 1,920,000원 × 12개월)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분할납부하실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57,600원을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험료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2015)년 개산보험료 (추성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❸보수총액	❹보험료율 (일반)요율	❺개산보험료액 (❸×❹)	❻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업급여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23,040,000	2.5/1,000	57,600	
	계	-	-	-	-	-	

IV. 확정보험료액과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비교를 통한 추가납부할액, 충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산재보험, 고용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 ③ 확정보험료액과 ④ 신고한 개산보험료액(2014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액)을 비교하여

❷ 신고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자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❸ (2014)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❶ 보수총액	❷ 보험료율	❸ 확정보험료액 (❶×❷)	❹ 개산보험료액	❺ 추가납부할액 (❸-❹)	❻ 조과액(❸-❺)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4-01-01~ 2014-12-31	/1,000			❻ 신고액	❽ 납부액	❻ 충당액 반환액
	실업급여	2014-01-01~ 2014-12-31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4-01-01~ 2014-12-31	/1,000					
	계	-	-	-	-			
❹ (2015)년 개산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❸ 보수총액	❹ 보험료율 (일반)요율	❺ 개산보험료액 (❸×❹)	❻ 분할납부 여부	❻ (201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000			❻ 일시납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000			[]일시납부 []분합납부	인원	보수 총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000				실업급여 인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인원
	계	-	-	-	-		보수총액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명 명 명 명 명
								월 월 월 월 월
								명 명 명 명 명
								월 월 월 월 월

● ③'14년 확정보험료액이 ④'14년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③-④)금액을 ⑥추가납부할액에 기재하고, ⑩개산보험료액[일시납부는 3%공제(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납부금액]과 합산 납부합니다.

(18페이지 납부서 작성 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⑤개산보험료 납부액이 ④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14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작성 사례 : 추가납부할액 1,000원(③-④)

①보수 총액	②보험료율 (일반)요율	③확정 보험료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 납부할액	비고
			④신고액	⑤납부액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	올바른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0	잘못된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1,000	올바른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2,000	잘못된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 ③'14년 확정보험료액이 ⑤'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

▷ (⑤-③)금액이 ⑩'15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③ 2014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 20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⑩2015년 개산보험료액 : 1,152,320원 일 경우, 2014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 - 752,000원)이 되고,

2015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34,560원 = 1,152,320 × 3% 원단위 이하 절사) 후 1,117,760원이 됩니다.

2014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5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1,117,76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액 금액을 아래와 같이 총당액란에 기재합니다.

⑦ 초과액(⑤-③)	
총당액	반환액
825,320	

▶ 총당액란 기재후에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④항목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⑤-③)금액이 ⑩'15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 공제한 '15년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을 총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예시

③ 2014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 20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⑩ 2015년 개산보험료액 : 752,320원 일 경우, 2014년 확정보험료액과 20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 – 752,000원)이 되고,

2015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22,560원 = 752,320원 × 3%, 원단위 이하 절사)후 729,760원이 됩니다. 2014년 확정보험료액과 20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5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729,760원을 초과하므로 ⑪분할 납부 여부를 일시납부로 선택하시고, 총당액과 반환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⑦ 초과액(⑤-③)		
총당액		반환액
729,760		95,560

④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총당이나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뒷면 ②항목 분합납부 신청서상의 1기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시고,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앞면 ⑩번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개산보험료 일시납액(3%공제 후)에 전액 충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액을 앞면 ⑦번 초과액란의 반환 액에 기재하고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후 반환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사본(여백에 사업장관리 번호기재)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88건설사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729,760원	729,760원	원
고용 보험	실입급여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88건설(법인계좌)	
반환금총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88건설(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주는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기를 충당하고 잔여액이 남을 경우에는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가능 금액을 기재
(이 경우 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2기 납부기한(5. 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88건설사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기) 188,080원		(1기) 188,080원		0원			
(2기) 188,080원		(2기) 15,940원		172,140원					
고용 보험	실업급여	월	월	월	월	월	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월	월	월	월	월	월		
	계	월	월	월	월	월	월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88건설(법인계좌)					
반환금총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88건설사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충당할 때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간에는 상호 충당할 수 없습니다.

V. 가산금 및 연체금 안내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 가산금의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 (첫달은 3%, 다음달부터 1%씩 최장 7개월 동안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와 보험료 체납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 미징수

납부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범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조과 체납하고 있는 등 안 산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 사업별로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 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범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확정보험료 |

- 2014년 개산보험료 신고액(신고서④번)이 2014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 앞면 ④항목 ⑥번 추가납부할액을 기재
※ **기존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 확정충당액 |

- 2014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신고서⑤번)이 2014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 앞면 ④항목 ⑦번 충당액을 (-) 값으로 기재

② 개산보험료

- 일시납부인 경우 : 신고서 앞면 ④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을 기재
- 분할납부인 경우 : 신고서 뒷면 ④항목 제1기 보험료액을 기재

③ 개산 3% 공제액

- 일시납부인 경우에만 기재
- 신고서 앞면 ④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 × 3% 하여 산정된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예시) 707,600원 × 0.03 = 21,228 → 21,220원,
196,550원 × 0.03 = 5,896 → 5,890원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전자신고 경감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보험료신고를 할 경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경감
 - ▷ 전자신고시 보험료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1.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3. 고용보험 자영업자

납부할 금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납부서상 ① + ② - ③ - ④
- 납부자용 영수증과 수납기관용 영수증서상의 납부할 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p>●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적어 납부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19,2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105,95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원</td></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td>원</td></tr> <tr> <td>납부할 금액(①+②-③-④)</td><td>86,750원</td></tr> </tbody> </table> <p>●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설립사업장 제외)</p> <p>●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p> <p>● 신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조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사업체화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p>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6,750원	<p>신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p> <table border="1"> <tr> <td>전자납부번호</td><td>바코드</td></tr> <tr> <td>0000-0000-00-0-0000000</td><td></td></tr> <tr> <td colspan="2">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td></tr> </table> <p>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p> <table border="1"> <tr> <td>납부 할 금 액</td><td>86,750원</td></tr> <tr> <td>납 부 기 한</td><td>2015년 3월 31일</td></tr> </table> <p>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p> <p>자료기준일 :</p>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		납부 할 금 액	86,750원	납 부 기 한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6,75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																								
납부 할 금 액	86,750원																							
납 부 기 한	2015년 3월 31일																							
<p>●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 시업별로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식업급여 6,0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실업급여 21,22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td></tr> <tr> <td>납부할 금액(①+②-③-④)</td><td>886,040원</td></tr> </tbody> </table> <p>●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설립사업장 제외)</p> <p>●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p> <p>●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p>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식업급여 6,0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86,040원	<p>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p> <table border="1"> <tr> <td>전자납부번호</td><td>바코드</td></tr> <tr> <td>0000-0000-00-0-0000000</td><td></td></tr> <tr> <td colspan="2">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td></tr> </table> <p>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p> <table border="1"> <tr> <td>납부 할 금 액</td><td>886,040원</td></tr> <tr> <td>납 부 기 한</td><td>2015년 3월 31일</td></tr> </table> <p>위 금액을 수납합니다</p> <p>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p> <p>자료기준일 :</p>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		납부 할 금 액	886,040원	납 부 기 한	2015년 3월 31일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식업급여 6,0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86,040원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123-45-67890-0																								
납부 할 금 액	886,040원																							
납 부 기 한	2015년 3월 31일																							

▷ 납부서 작성 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이 있는 경우																																																	
201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액 10,000원, 2015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 (일시납), 전자신고	201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액 10,000원, 2015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 (4회 분할납부)	2014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5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 (일시납), 전자신고	2014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5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 (4회 분할납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10,0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100,00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3,000원</td></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td>5,000원</td></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td>102,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10,0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25,00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원</td></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td>원</td></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td>35,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10,0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100,00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3,000원</td></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td>5,000원</td></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td>82,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td><td>-10,000원</td></tr> <tr> <td>② 개산보험료</td><td>25,000원</td></tr> <tr> <td>③ 개산 3%공제액</td><td>원</td></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td>원</td></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td>15,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 확정보험료는 3%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 납부할 경우 3%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안내

-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셨으면, 보험료신고서 서식 내의 관할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팩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험료는 납부서 뒷면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3월	26일 한국인(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팩스 접수** (팩스번호 : 29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참조)
 - 보험료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는 사업주께서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
 - 일반팩스와 달리 통화중 대기 현상이 거의 없으나, 만일, 통화 중이면 일반팩스로 신고서 송신 후 직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팩스 수신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5. 3. 1~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자팩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도 가능)
 -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우편 접수** : '15. 3. 31(화)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전자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란?

고용·산재보험 민원업무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험가입, 납부서 발급,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보험료 신고·납부 때문에 공단 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업무 범위 :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전자납부, 정보조회

- 가입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가입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가입

※ 단, 전자신고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시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각각 5천원씩 경감

▷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①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②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③ 고용보험 자영업자

- 2015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一石二鳥(일석이조) 경품 행사 안내

■ 행사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2015년 3월 31일(화)

■ 행사대상 : 2015년 3월 31일(화)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보험료신고를 한 사업장

※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신고,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

■ 경품내용 : 3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1등), 노트북(2등),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3~5등)

■ 당첨자 발표 : 2015년 4월 10일(금)

–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에 당첨자 명단 게시 및 SMS 개별안내

▶ 보험료 전자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① 우측의 '보험료 신고 바로가기' 클릭 또는 '사업장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서' 클릭

②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 2015 선택, 신고서 구분 : 확정및개산 ➔ 조회 클릭

③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항목 입력

[별지 제23호 서식] [임시저장 내역 조회]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보험구분*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임금체권)	▶ 사업장 상태*	정상
▶ 사업장관리번호*	- - -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보험년도*	2015
▶ 신고서구분*	확정및개산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사업장명	

⚠ 보험구분, 관리번호, 신고서 구분을 선택하고 우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 임시저장자료 삭제는 마이페이지 - 임시저장자료조회에서 조회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④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입력

●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신고액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 체권부당급포함)		2014-01-01 ~ 2014-12-31	0	6.84 / 1000	0	74,597,820	74,597,820
	합계	2014-01-01 ~ 2014-12-31	0	0	0		
고 용 보 험	설업급여	2014-01-01 ~ 2014-12-31	0	13.00 / 1000	0	347,107,390	347,107,390
	합계	2014-01-01 ~ 2014-12-31	0	0	0		
	고용안정/ 직업등록개발	2014-01-01 ~ 2014-12-31	0	8.50 / 1,000	0	226,954,830	226,954,830

⑤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자료' 입력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인원	<input type="checkbox"/> 보수총액						
1월			원	원	원	원	원	원
2월			원	원	원	원	원	원
3월			원	원	원	원	원	원
4월			원	원	원	원	원	원
5월			원	원	원	원	원	원
6월			원	원	원	원	원	원
7월			원	원	원	원	원	원
8월			원	원	원	원	원	원
9월			원	원	원	원	원	원
10월			원	원	원	원	원	원
11월			원	원	원	원	원	원
12월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결과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 현장)은 8페이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⑥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납부구분(일시납부/분할납부)선택.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접수' 클릭(접수완료)

계산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율	계산보험료	납부구분
산재보험 (임금체결부담금포함)		2015-01-01 ~ 2015-12-31	0	6.84 / 1000	0	<input checked=""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고 용 보 험	설업급여	합계	0	0	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checked="" type="radio"/>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합계	0	8.50 / 1,000	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checked="" type="radio"/> 분할납부
활성 보수총액		마비 계산보험료 보수총액 합산(30%초과) 사용기제	0	0	0	<input type="radio"/> 근로자감소 <input type="radio"/> 휴업일 <input type="radio"/> 기타

⑦ 납부서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신용카드 납부 관련 25페이지 참조)

보수총액 범위 예시

●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고,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 소득과 동일

※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고용·산재보험료 보수 산정 대상)
 -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
 - ▷ 선택적 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
 -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

-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
-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 ▷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
- ▷ 종업원이 사업주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 학자금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고용·산재보험료 보수 산정 제외)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됨
-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서비스 안내

우리 공단은 고객님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국에 1,0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무료로 대행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서비스 내용

- 대행 업무 : 고용·산재보험의 기입(성립), 보험료·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신고, 소멸신고 등 각종 신고 및 주요 업무 일체
 - 이용방법 :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위·수탁계약 체결 후 고용·산재보험 사무 위탁
- ※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사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참조하세요.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14. 9. 25.) :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은 개인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가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산재보험 가상계좌와 고용보험 가상계좌는 별도이므로 각각 입금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 단위 금액은 절사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 ~18:00 ('15. 3. 31까지)
- 보험료 납부기한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 가능

○ 인터넷으로(뱅킹) 납부

- 납부은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홈페이지(www.giro.or.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공과금 납부 선택)」로 접속하여 납부
-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 ~22:00(단, 일부 은행의 경우 365일 07:00 ~22:00이므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 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 신용카드 납부

- 납부한도 : 고용·산재 보험별 1억 2천만 원 한도로 납부 가능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며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
- 납부방법 : ①인터넷으로 홈페이지(www.giro.or.kr) 개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사회보험료 메뉴 ➡ 산재보험료 (연납 / 자진납) 또는 고용보험료 (연납 / 자진납)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클릭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선택) ➡ 납부 처리 ②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모바일 고지·납부

- 모바일 고지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분할 보험료 납부서 또는 자동이체 출금 안내문 전송
- 모바일 납부 서비스 : 전송된 납부서의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및 뱅킹앱(우리은행)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대상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의 2,3,4기 분할 납부 보험료(일시납부, 제1기 분할 납부 보험료는 제외)
- 신청방법 : 우리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모바일 고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 / 신고 ➡ 보험료신고 ➡ 모바일 고지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분할납부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한 사업장 : '14년 확정보험료 및 '15년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보험료는 2기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2기부터 자동이체를 적용받으려면 4월 10일까지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유선신청(유선신청은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 직원 가능)

참고 8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대표번호 : 1588-0075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공단본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0		681-240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		152-981
산재심사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		152-981
인재개발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365-831
고객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141		500-470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 21층, 22층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100-705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층, 10층, 13층	강남구	135-839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6층, 14층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38-731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23, 9~12층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21-854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4층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150-981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2층, 5층, 6층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131-857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11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152-759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	서초구	137-728
의정부지사(본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3~5층		
의정부지사(별관)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34, 6층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본관: 가입지원·복지, 별관: 보상)	480-848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6~7층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200-972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4층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210-954
원주지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220-15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	성동구	133-835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2~4층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235-801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30, 3층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30-80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1층	서울특별시,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사 및 의정부지사, 전국(내과계질환중 암사건, 기타질환)	150-981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5~9층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601-837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1~3층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609-817
부산북부지사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6, 3~4층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617-807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 2~3층	경남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641-718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5층	울산광역시	680-845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1~3층	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626-821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6~8층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660-724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통 영 지 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50-826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구	614-728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고관로 5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사	601-836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7~9층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700-740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침산로 142, 2~3층	대구광역시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 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702-856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704-911
포 항 지 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3층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 군	790-826
구 미 지 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번지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730-350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7층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712-802
영 주 지 사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9층~10층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750-915
안 동 지 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5층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760-905
대구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대구회관 12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사	700-791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1~10층, 16층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405-835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403-711
수 원 지 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4층	경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440-834
평 택 지 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9층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459-813
부 천 지 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7~9층	경기 부천시, 김포시	420-769
안 양 지 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7~9층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 시	430-838
안 산 지 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경기 안산시, 시흥시	426-180
고 양 지 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	경기 고양시, 파주시	410-813
성 남 지 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4~6층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461-729
경인지역본부(본관) 판정위원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3층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사 (의정부지사 제외)	403-711
광주지역본부(본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9~10층	광주광역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502-713
광주지역본부(별관)	광주 북구 금재로30, 4~5층	(본관: 송무·복지, 별관: 경영지원·가입자 원·보상)	500-863
전주지사(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561-231
전주지사(별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21-12, 5층	(본관: 가입지원1부(복지), 재활보상부, 별관: 가입지원1.2부)	561-231
익 산 지 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전북 익산시, 김제시	570-210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573-030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원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530-711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55-70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	제주특별자치도	690-824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4층, 7층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506-721
광주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광주 북구 삼소로 141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소재하는 지사	500-470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16~17층	대전광역시(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302-828
청주지사 (본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360-808
청주지사 (별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 내율사 세마을금고 4층	(본관: 기업지원·복지, 별관: 재활보상)	360-808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7층, 8층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331-230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천변로 261, 1~3층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380-708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신설1길 19, 2~4층	충남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통영군, 부여군, 태안군	355-936
유성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7~8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305-150
대전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9층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사	302-828

기관명	소재지	진료전문센터	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관절센터, 뇌졸중전문센터, 소화기센터	403-712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부설)	426-858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재활전문센터, 근골격계전문센터	642-791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재활전문센터, 골관절센터, 통증치료센터	540-717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306-807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재활전문센터, 호흡기 중심 재활치료 제공	235-100
부설케어센터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고령의 진폐장애인에게 주거 및 편의 제공	235-703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240-714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길 145		233-805
경기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부설케어센터	445-956
부설케어센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7		445-956
재활공학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		403-120
대구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	수증재활치료센터, 직업사회재활센터, 재활전문치료센터	702-911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03-711

2015년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편람

발행일 : 2015년 3월

발행인 : 이 재 갑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인 쇄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